

관세연구 10-01

#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2010. 10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 목 차

I. 서 론	7
II.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	9
1. 수출통관	9
가. 개요	9
나. 수출신고	11
다. 수출신고물품의 검사	14
라.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15
마. 수출신고물품의 적재	17
2. 수출물품의 위험관리	18
가. 개요	18
나. 수출물품의 위험관리 조직	21
다. 수출물품의 위험관리 방법	21
III.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23
1. 수출통관	23
가. 개요	23
나. 수출화물정보의 전산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25
다. 제출정보의 내용	26
라. 수출자 및 운송인의 의무	30
마. 수출통관시스템의 이용방식	30
2. 수출규제제도	32
가. 개요	32

나. 수출허가제도.....	33
다. 수출규제조치.....	39
IV. 결    론.....	49
부    록.....	51
참고문헌.....	71

## 표 목차

〈표 II-1〉 수출통관의 관련법령	10
〈표 II-2〉 수출신고물품 검사생략사유 부호	20
〈표 III-1〉 수출통관시스템에 의해 제출되는 화물정보	27
〈표 III-2〉 상업규제리스트(CCL) 분류	36
〈표 III-3〉 미국의 수출규제 담당기관	40
〈표 III-4〉 주요 활동별 수출규제기관	41

## 그림 목차

〈그림 II-1〉 수출통관처리 흐름도	18
〈그림 III-1〉 AES Process Flow	31
〈그림 III-2〉 AESDirect/AESPcLink Process Flow	31
〈그림 III-3〉 통상국 차트	38
〈그림 III-4〉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조직도	43



## I. 서론

- 9.11 테러를 계기로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신속통관’에서 ‘안전’으로 초점이 변화됨
  - 2001년 9월 11일 이전까지의 관세행정은 개정교토협약을 기초로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국가간 조화(Simplification & Harmonization)”를 추구하였음
    - GATT체제 출범 이후 물류비 절감을 위한 신속통관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
  - 그러나 9.11테러 이후에는 WCO SAFE Framework(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를 중심으로 “불법화물의 국가 간 이동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화·확대되는 추세임
  - 이에 우리나라 관세청도 2008년 “관세행정 중장기발전전략(WBC 2012+)”을 수립하여 불법화물 등에 대한 위험관리의 발전방향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관세행정에서 말하는 위험관리는 불량식품·의약품·마약류 밀반입, 사이버 불법거래·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테러물품·전략물자 관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 이를 규제하는 법령도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등 다양한데, 이러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큰 화물을 불법화물 또는 우범화물이라 볼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는 수출지원정책에 따라 안전 및 정확성 측면보다는 신속통관을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수출통관상 위험관리 부분에 비효율성이 발생
  - 예를 들어, 내륙지 세관<sup>1)</sup>의 수출검사는 수출물품 미소재 및 통제곤란으로 검사의 실익이 미미함

---

1) 본부 세관급으로 서울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이 내륙지 세관에 해당

- 따라서 수출물품의 신속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출통관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함
  - 수출통관절차, 수출물품의 위험관리조직 및 위험관리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수출통관제도를 연구하여 우리의 수출통관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보고서의 연구 범위와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와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파악 등을 조사 범위로 함
  -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 현황에 대해서 살펴봄
  - 제3장은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파악으로 AES(Automated Export System) 등에 대해서 살펴봄
  -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다루어진 미국의 수출통관제도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II. 우리나라의 수출통관제도

### 1. 수출통관

#### 가. 개요

-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국환거래법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통관이란 물품의 국가 간 이동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상의 규제 사항과 실제로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과 서로 비교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물품을 수출·수입·반품하는 것을 의미함(관세법 제2조 12호)
  - 통관에는 물품의 성질과 이동경로에 따라서 수입통관, 수출통관, 반송통관으로 구분함
  - 통관절차상의 방법에 따라서 일반통관과 간이통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대금결제 방식에 따라 유환통관과 무환통관으로 나뉨<sup>2)</sup>
  
-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물품은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밟아야 함
  -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하는 것임

2) 전정기, 『관세법』, 율곡출판사, 2009, p. 472

- 세관은 이러한 통관절차를 통하여 당해 수출과 관련한 수출자의 제반 의무사항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됨
- 수출통관은 선적지 세관에서 할 수도 있고, 수출품 생산지에 있는 내륙지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 후 내륙운송을 거쳐 선적항에서 선적할 수도 있음

〈표 II-1〉 수출통관의 관련법령

구분	업무 순서	업무 수행주체	관세청 제공서식	관련법령
1. 계약	수출계약	중개인 수출자 수입자		관세법 및 시행령, 고시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신용장(L/C) 내도	통지은행		관세법 및 시행령, 고시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외국환거래법
2. 승인 (요건확인)	승인(요건확인)	승인, 요건확인기관 수출자, 관세사		관세법 및 시행령, 고시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수출물품확보	화주, 제조자		관세법 및 시행령, 고시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외국환거래법
3. 신고/수리	수출신고	세관 화주, 관세사		관세법 및 시행령, 고시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수출신고수리	세관 화주, 관세사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 보세공장내 내국작업 보세공장 물품의 수용	관세법 및 시행령, 고시 대외무역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4. 선적	선적	보세장치장 선사, 상공사, 포워더 세관		관세법 및 시행령, 고시
5. 출항	출항	선사, 상공사, 포워더 세관	환급신청서 평균세액 증명서발급 환급금 전용계좌 통보서	관세법 및 시행령, 고시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내부자료

## 나. 수출신고

-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 당해물품의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함
  - 우리나라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sup>3)</sup>방식 및 인터넷을 통한 수출통관절차로 수출물품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통관하고 있음

### 1) 수출신고서의 작성

- 보세공장 또는 수출자유지역으로부터 외국으로 반출(반송·수출) 신고서는 관세청에서 정한 신고서 양식에 따라 수출신고서를 작성함(“남북교역물품통관관리에관한고시” 및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반송)하는 물품의 신고서에도 동일함)
  - 수출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출신고서는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을 근거로 작성하며, 신고시점에 제시된 현품과 동일하여야 함
    -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류 등 주요품목에 부수하여 수출되는 품목으로서 금액이 적고 종류가 다양하며 관세환급 또는 무역통계 작성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한 『란』에 기재할 수 있음
    - 이사물품의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이 다양하여 품목별로 각각 별도의 란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비능률적일 때에는 제1란 품명 및 거래품명에 대표적으로 이사물품임을 「Household goods」로 영문표기하고, 그에 대한 세번은 2424.00-0000으로 기재하며, 품목별 수량, 중량, 포장개수, 금액 등은 일괄하여

3) 기업 간에 전자문서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지정한 표준화 시스템이다. 국제연합은 1960년부터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 아래 대외무역서류 간소화 및 표준화 작업팀을 구성하여 무역서류의 간소화와 표준화를 추진하였고, 1963년에 무역서류상 반복해서 나타나는 기재항목의 배열에 대한 표준서식 설계도를 제정하였다. 1987년 3월 유인·행정·무역 및 운송에 관한 EDI 국제표준이 제정되었다. 그 후 1990년 5월 본격적인 EDI 통신표준인 X.435 권고안이 제정되었다. 한국은 1987년에 처음 도입하였다.

해당란에 기재함

- 결제금액에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운임·보험료 등을 수출자(제조사)가 구분하여야 하며, 관세사 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신고하여야 함

## 2) 수출신고인

-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화주 또는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취급법인이거나 완제품공급자임
  - 수입의 경우와 달리 완제품공급자도 수출신고인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수출물품의 완제품공급자가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고려한 것임

## 3) 수출신고세관

- 수출 또는 반송신고는 수출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하여야 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됨
    - 선상수출신고: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의 입항지 관할세관장에게 신고
    - 현지수출 어패류: 운반선의 출항 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
    - 원양수산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신고
- 수출신고에 있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예를 들어, 제조공장의 최종 검사 장소에 물품을 둔 상태에서도 수출신고가 가능함
  - 그러나 반송신고는 당해 물품이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장소인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외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된 후에 가능함

#### 4) 수출신고의 방법<sup>4)</sup>

- 수출신고는 당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별로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통관시스템(CEDIE: Customs EDI for Export)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전송하는 것으로 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신고자료를 CEDIE에 전송 후 수출신고서 및 해당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품목 중 수출신고 수리 전에 요건구비 증명이 필요한 물품(단, 요건확인기관과 전산망이 연계된 물품 제외)
    -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 수입통관된 물품의 수출
    - 수출자가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재수입시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상의 필요)
    - CEDIE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 수출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5) 수출신고의 처리

- 수출신고인이 CEDIE를 통해 수출신고서를 오류없이 전송하면,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한 신고서의 처리방법은 다음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로 처리됨
  - 자동 수리(서류 제출대상이 아닌 신고물품으로 CEDIE에서 수리)
  - 즉시 수리(자동 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중 검사가 생략되는 신고물품으로 세관공무원이 간단한 심사를 한 다음 수리)
  - 검사 후 수리(현품검사가 필요한 신고물품으로 세관공무원이 현품을 검사한 다음 수리)

4) 박성철·임목상, 『수출입통관의 이해』, 두남, 2008, pp. 235~236

## 다. 수출신고물품의 검사

- 수출물품에 대한 물품검사는 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거나 신고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현품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음
  - 세관장은 수출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시 포장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세관장은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취검사 또는 컨테이너 검색기 검사 등으로 검사방법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음
  
- 수출신고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Cargo Selectivity: C/S)은 물품, 수출자 또는 제조자, 신고인 등의 우범성 및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통관시스템에서 선별함
  - 세관장은 수출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에도 다음 업체에 대하여는 검사생략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 투자기업
    - 월별납부업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전분기 수출 실적 상위 10% 해당 업체로서 최근 1년간 수출검사에 따른 적발 실적이 없고 관세법 및 환특법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법규준수도가 높다고 인정된 업체
  
-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적재 전에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안보위해물품 및 마약 등 특별한 범칙정보가 있는 경우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소재지 산재 등의 사유로 신고인이 적재 전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기타 세관장이 적재시점에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 희망일(검사 희망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에 이루어 짐
  - 그러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반입 완료 후 검사를 실시함
  
-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는 당해 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당해 장소에서 실시함
  - 부정수출 또는 부정환급 등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 업체의 성실도 등을 감안하여 물품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명령에 의하여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후 검사를 할 수 있음

#### 라. 적하목록 제출 및 승인절차

- 수출화물 적하목록<sup>5)</sup> 작성의무자는 Master B/L일 경우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작성하며, House B/L일 경우 포워더(화물운송 주선업자)가 작성함<sup>6)</sup>
  - 수출화물 적하목록은 선사 또는 항공사가 자신이 작성한 Master B/L과 포워더가 작성한 House B/L을 취합하여 출항 익일까지 세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1) 적하목록의 제출 방법(관세법 제45조)

- 선사나 항공사는 자신이 발행한 선하증권(Master B/L)자료를 입력함
  - 포워더는 선사, 항공사로부터 발급받은 Master B/L을 기초로 자신이 발행한 House B/L 자료를 입력함
- 선사 항공사가 입력한 Master B/L 자료와 포워더가 입력한 House B/L 자료는 컴퓨터

5) 적하목록이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임. 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작성하며 적하목록의 오류가 있을 시 수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음

6) Master B/L(Bill of Lading)이란 선사나 항공사가 자신이 운송하기로 한 화물에 대하여 포워더 화주에게 발행한 유가증권임. 포워더(Forwarder)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수출입화물운송등의 알선(주선)을 업으로 하는 화물운송 주선업자를 말함. 포워더는 선사·항공사에 화물운송주선을 하고 Master B/L을 발급받음. 포워더는 일반인을 상대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화주에게 House B/L을 발행함

에서 취합이 되며, 취합이 완료된 자료(이를 적하목록이라 함)는 세관에 전송됨<sup>7)</sup>

- 적하목록은 선사, 항공사, 포워더가 각각 작성 하지만 제출 책임자는 선사와 항공사임

## 2) 적하목록의 수정 및 정정

- 적하목록이 잘못 작성된 경우 기재사항을 수정(또는 정정)하여야 함
  -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하기 전에 선사에서 작성한 적하목록에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수정이 가능하나, 세관에서 적하목록을 접수한 후에는 수정(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B/L과 정정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수정이 가능함

## 3) 적하목록의 제출

- 해상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하기 전까지(미국행 화물 및 미국 경유 화물은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화물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항 익일 24시까지 제출할 수 있음
    - 벌크화물
    - 중국 및 일본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
    - 환적화물, 공컨테이너
    -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6-1조(선상 수출신고) 해당물품
    - 기타 적재 전까지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7) Master B/L과 House B/L을 취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 Manifest Consolidation System)이라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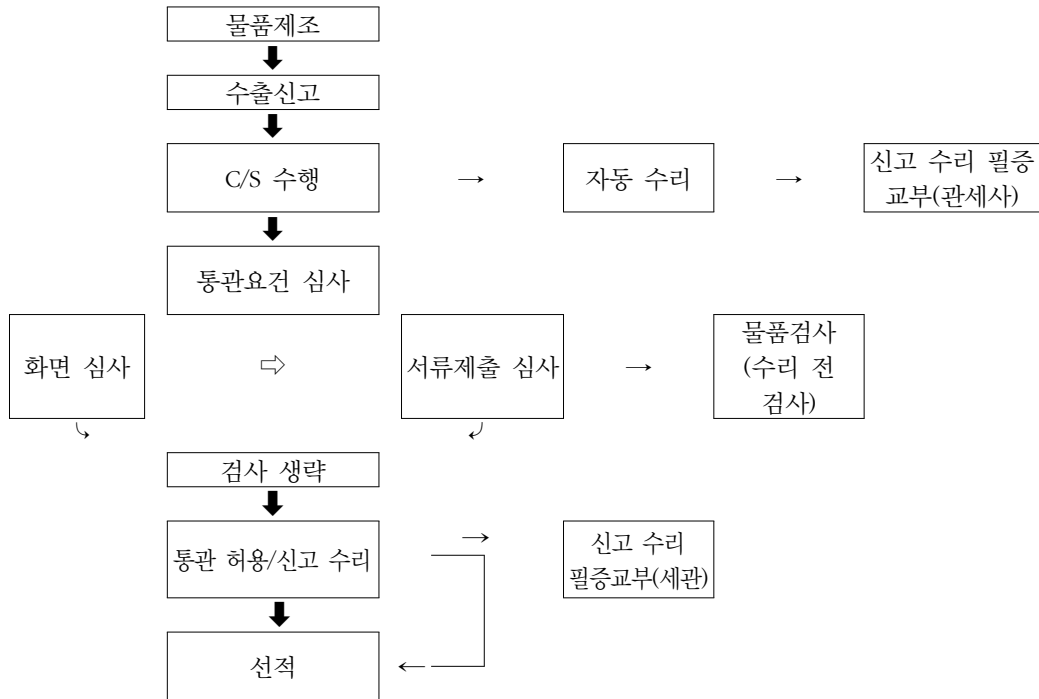
### 마. 수출신고물품의 적재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그 물품이 장치된 장소에서 선적지까지 운송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되므로 운송수단 선택과 운송시기는 화주가 임의로 할 수 있음<sup>8)</sup>
  -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후 반송되는 물품
  -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후 반송되는 물품
  - 여행자 휴대품 중 반송되는 물품
  -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함
  - 수출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적재되지 않는 물품은 수출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수출수리물품의 적재가 불가피하게 연장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 내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적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수출 수리 후 연장승인 없이 적재를 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미적재에 의한 수출 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한 후 14일 이내에 미적재 원인규명을 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직권으로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음

---

8) 박성철·임목상, 『전계서』, p. 238

〈그림 II-1〉 수출통관처리 흐름도



주: 1) C/S: Cargo Selectivity(우범화물 선별), 업체별·물품별 관리요인에 따라 선별  
 2)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컨테이너 안전협정)

자료: 관세청

## 2. 수출물품의 위험관리

### 가. 개요

- 수출물품선별검사및확인에관한시행세칙 제7조의 검사 및 확인대상에서 수출신고 물품 중 수출신고시 검사하는 물품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음
  - 환급대상으로 소요량 확인 및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물품
  - 일련번호 확인 등 현품 일치여부 확인이 필요한 물품
  - 기타 수출신고시 검사만으로 충분한 불법·부정수출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으로 인정되는 우범성이 비교적 낮은 물품

- 수출신고물품 중 적재 전 확인을 실시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음
  - 수출신고와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 적재할 우려가 있는 우범물품
  - 전산에서 품목별 표준중량과 차이가 큰 것으로 선별된 물품 중 위장수출 우려가 있는 물품
  - 기타 불법·부정수출 우범성이 높아 적재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검사 및 확인대상 물품은 수출물품선별검사및확인에관한시행세칙 제7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출C/S시스템에서 선별함
  - 수출C/S시스템의 선별기준에 대한 사항은 관세청 비공개 사항임

〈표 II-2〉 수출신고물품 검사생략사유 부호

구분	부호	부 호 설 명		
수출신고시 검사	검사 → 생략	11	서류 또는 화면심사만으로 통관요건 등 확인이 가능한 경우	
		12	동일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기타, 불법·부정수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 → 검사	21	신고된 품명·규격이 해당 세번과 적정하지 않거나 신고된 품명·규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22	수출업체(위탁업체 포함)와 수출신고물품이 상호관련성이 적거나, 수출하는 품목이 빈번하게 바뀌는 경우	
		23	환급대상 물품으로 소요량 확인 및 정확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24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물품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5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및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26	물품소재지가 수출업체 소재지와 서로 상이한 경우로서 부정수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7	기타 불법·부정수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재 전 확인	확인 → 생략	31	성실업체에서 수출신고한 물품으로서 부정수출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2	비환급대상으로 위장수출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3	적하목록상 중량, 포장개수가 수출신고 내역과 서로 일치하며 품목과 중량으로 보아 타물품의 혼입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4			기타, 불법·부정수출 우려가 적어 확인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 → 확인		41	환급대상으로 위장수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42	신고된 수량, 중량 및 포장개수로 보아 신고물품 이외의 타 물품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43	적하목록상 포장개수 및 중량이 수출신고 수리내역과 차이가 큰 경우	
		44	CSI 협정에 의거 안보위해물품 반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45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6	수출신고 수리후 중량, 포장개수, 품목 정정이 빈번하거나 정정내역의 차이가 큰 경우	
		47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및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8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49	기타 세관장이 적재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수출물품의 위험관리 조직

-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위험관리를 위해 관세청과 세관으로 위험관리조직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 관세청에서는 전국단위의 위험정보를 분석 관리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대상 선별기준 및 등록을 관리함
  - 세관에서는 세관별 반입되는 수출입물품의 위험정보를 분석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선별하는 등 세관 자체적으로 선별기준을 운영하고 있음

### 다. 수출물품의 위험관리 방법

- 수출물품의 대부분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자동수리되고 있으며, 수출신고서 심사가 필요하거나 검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 또는 검사 후에 신고수리하고 있음
  - 수출물품은 자동 수리, 화면심사, 서류심사 및 검사로 구분하여 수출신고서를 처리하고 있음
  -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제고 및 업체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심사대상과 검사대상을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 관세청은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중 중고자동차, 전략물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물품, 우범정보가 있는 물품 및 수출신고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이에 우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 특별 관리하고 있음
- 수출물품의 위험관리를 위하여 수출물품 검사대상 선별시스템(수출c/s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시스템에 의하여 수출신고된 물품 중 검사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검사결과 등록 및 검사물품에 대한 이력 등 종합적 관리를 하고 있음

- 검사대상물품의 선별은 전국 세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국공통 선별기준과 세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선별기준을 수출c/s시스템에 등록하고 자체 세관에서 적용되는 세관자체 선별기준이 있음

## Ⅲ.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 1. 수출통관<sup>9)</sup>

#### 가. 개요

- 미국 관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수출화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중요한 업무가 있음
  - 통계청(Bureau of the Census)을 위해 수출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수출화물이 수출에 대한 허가 및 제재에 대하여 규정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는 여부를 확인 및 감시하여야 함
    - 이러한 관세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수출통관시스템(Automated Export System; AES)임
  
- 수출통관시스템은 여러 정부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선적자료가 관세청에 전자적으로 신고되어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방 정부의 중앙시스템임
  - 관세청, 통계청 산하 국제무역부문(Foreign Trade Division),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국무부 산하 군수거래통제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DDTC) 및 기타 연방기관들과 수출무역단체에서 합작 투자하여 개발
  - 이는 1995년 7월에 Baltimore, Norfolk, Charleston, Houston, Los Angeles/Long Beach의 5개 항구를 이용한 수출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여 1996년 10

9) <http://www.cbp.gov/xp/cgov/trade/automated/ase/about>; US Census Bureau, Automated Export System Compliance Review Program: Best Practices, November 2008

월에는 전 항구, 1997년 7월부터는 전 공항 및 국경으로 확대

- 도입초기에는 선박수출신고(Shipper's Export Declarations; SED)의 서면양식과 전자양식을 모두 신고하도록 이중신고가 강제되었으나, 1996년 10월부터 이중 신고의무가 폐지됨

○ 따라서 현재는 모든 항만, 공항, 국경을 경유하는 모든 수출에 대해 적용되는 전국 가적인 시스템임

□ 수출통관시스템은 대외무역법시행규칙(Foreign Trade Regulations; FTR)과 수출 관련 법령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됨

-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편집이 가능하고, 수출신고 즉시 오류가 감지되어 수정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수출관련법령의 준수를 보장하는 한편, 전자적으로 집계된 수출선적자료를 통해 무역 통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됨

□ 수출통관시스템의 장점으로는 수출관련법령 이행 보장, 발견 즉시 오류수정, 비용 감소, 선적허가에 대한 서면평가 생략을 들 수 있음

- 첫째, 편집기능에 의한 오류 수정을 통해 수출신고 관련 요건의 준수를 보장
  - 수출서류를 성공적으로 신고했다는 확인으로서 이 시스템은 내부업무처리번호(Internal Transaction Number; ITN)를 발송함
- 둘째, 수출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생략 또는 불일치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선적이 지연되거나 과태료를 받기 전에 미리 오류를 정정하도록 함
- 셋째, 중요한 자료편집을 할 수 있어서 수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며, 무료 보안인터넷프로그램인 AESDirect를 통해 수출정보 신고비용을 절약
- 넷째, 산업보안국(BIS)과 군수거래통제국(DDTC)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사전에 허가를 받은 수출선적에 대한 자료는 허가에 대한 서면평가 없이 적절한 Partnership Agency에 거래를 전송함

## 나. 수출화물정보의 전산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 수출통관시스템(AES)을 통한 수출정보 전자신고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
  - 물품분류코드별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유체물의 수출시 전자수출정보(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sup>10)</sup>
    - 허가대상 물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신고의무가 있음
  
- 대외무역법시행규칙(FTR)에 의하면 전자수출정보에 대한 수출 전 신고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 후 신고가 가능<sup>11)</sup>
  - 허가를 필요로 하거나 허가면제의 대상이 되는 선적은 관련 허가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만 수출 후 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출 후 신고도 수출일로부터 10일 안에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sup>12)</sup>
  
- 대외무역법시행규칙 이외에도 관세청, 산업보안국, 국무부 등이 규정하는 수출관련 법령에서 수출규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관세법시행규칙에 의하면 화물정보를 관세청에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sup>13)</sup>
    - 제출기한은 선박에 선적하는 경우 출발 24시간 전, 항공기에 선적하는 경우 최종 미국공항의 예상 출발시각 2시간 전, 트럭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국경에 도착하기 1시간 전, 철도에 선적하는 경우에는 국경에 도착하기 2시간 전
  
- 이러한 운송수단별 화물정보 제출기한은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에 대해

10) 대외무역법시행규칙(15 CFR) §30.2(a)

11) 대외무역법시행규칙 §30.2(b)

12) 대외무역법시행규칙 §30.2(c)

13) 관세법시행규칙(19 CFR) §192.14

#### 서만 적용

- 수출허가의 대상이 되는 화물은 화물정보의 사전제출요건을 규정한 다른 법령에 따라 출발 전에 화물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
- 다른 정부기관에서 통제하는 수출화물에 대한 요건은 변경권한이 있는 정부기관에 의해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시행
  - 예를 들어, 관세청은 중고자동차의 수출에 대해 72시간 전 사전통지요건을 계속 시행

#### 다. 제출정보의 내용

-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화물정보(Commodity Data)와 운송정보(Transportation Data)로 구분됨<sup>14)</sup>
  - 화물정보는 <표 Ⅲ-1>와 같이 필수 정보(Mandatory Data)와 조건부 정보(Conditional Data), 선택적 정보(Optional Data)로 구성
  - 운송정보는 운송방법(배, 항공기, 철도 또는 트럭), 운송인 식별코드, 운송인명, 최종목적국, 수출예정일, 수출항의 내용을 포함

---

14) 관세법시행규칙 192.14(c)(1),(2)

〈표 Ⅲ-1〉 수출통관시스템에 의해 제출되는 화물정보

구분	종류	상세
필수 정보	수출자 및 수출자 확인 (USPPI and USPPI Identification)	수출자의 이름, 주소, 인적사항, 연락처를 수출통관시스템에 신고해야 함
	수출일 (Date of Export)	수출일은 수출항을 떠나기로 예정된 날임
	최종양수인 (Ultimate Consignee)	최종양수인은 해외에 소재하는 자로서 실제 수출화물을 받는 자를 의미
	U.S. State of Origin	물품이 수출항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주정부의 2-Character 우편번호임
	최종목적국 (Country of Ultimate Destination)	물품이 소비되거나 추가적으로 가공되는 국가를 의미
	운송방법 (Method of Transportation)	물품이 미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방식임 - 캐나다, 멕시코, 다른 외국을 통한 환송에 대해 운송방식은 운송인이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방식임
	운송인명 (Conveyance Name/Carrier Name)	미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자로서 수출시점에 알려진 운송인명
	운송인 식별 (Carrier Identification)	미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운송하는 운송인을 특정하는 운송인 식별번호임
	수출항 (Port of Export)	수출항은 물품이 수출운송인에 선적되는 항구·공항이거나 미국국경을 경유하여 외국으로 육상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항구임
	특수관계자 표시 (Related Party Indicator)	수출자와 최종 양수인 중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직·간접적으로 10%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들 간의 거래임을 나타내는 표시
	내국 또는 외국 표시 (Domestic or Foreign Indicator)	수출품이 내국산인지 외국산인지를 표시 - 물품분류번호가 동일하더라도 국내 생산 물품에서 외국산을 분리해 신고
	물품분류번호 (Commodity Classification Number)	10자리 물품분류번호를 신고
	물품명세 (Commodity Description)	Schedule B나 HS코드(HTS)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선적된 물품내역을 신고
	측정기본단위 (Primary Unit of Measure)	측정단위는 Schedule B나 HS코드(HTS)에 기재된 기본양과 일치해야 함
기본양 (Primary quantity)	양은 Schedule B나 HS코드(HTS)에 기재된 최초 단위와 일치하는 단위들의 합계	

〈표 Ⅲ-1〉의 계속

구분	종류	상세
필수 정보	적하물 무게 (Shipping Weight)	상품의 무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포장무게를 포함 - 적하물 무게는 항공기, 배, 철도, 트럭에 의한 수출과 가정용품의 수출에서 필요 - 우편, 파이프라인에 의한 수출에서는 필요하지 않음 - 컨테이너 화물에서 컨테이너 무게는 적하물 무게에 포함되지 않음
	가격 (Value)	전자수출정보(EEI)에 신고된 가격은 미국 수출항에서 물품 가격이어야 함 - 내륙 운송, 보험, 미국 항구·공항·국경에서의 비용 등을 포함
	수출정보코드 (Export Information Code)	수출적하물의 유형이나 수출된 물품의 조건을 확인하는 코드(예를 들어, 구호나 자선목적의 기증품, Foreign Military Sales Program에 의한 적하물, 가정용품 등)
	적하물 참조번호 (Shipment Reference Number)	신청자에 의해 부여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서 신청자의 시스템에서 적하물의 확인을 가능하게 함
	라인번호 (Line Number)	적하물에서 특정한 물품라인의 물건을 확인하는 번호
	위험물표시 (Hazardous Material Indicator)	적하물이 교통부에 의해 위험한 것으로 정의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표시
	담보번호(Inbond Code)	적하물이 담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운송되는지를 알려주는 번호
	허가번호/허가면제번호 (License Code/License Exemption Code)	연방정부기관이 요구하는 허가, 승인,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를 받은 물품 또는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은 물품인지를 확인하는 번호
	Routed Export Transaction Indicator	적하물이 Routed Export Transaction인지를 확인하는 표시
	Shipment Filing Action Request Indicator	신청자에게 수출적하물거래를 추가, 변경, 대체,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시
	Line Item Filing Action Request Indicator	신청자에게 수출적하물거래 안에서 물품라인을 추가, 변경, 삭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시
조건부 정보	대리인 및 대리인 확인 (Authorized Agent and Authorized Agent Identification)	대리인이 전자수출정보를 준비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식별 번호, 대리인 이름, 대리인의 주소, 연락 정보를 제출해야 함
	중간 양수인 (Intermediate Consignee)	중간양수인의 이름과 주소를 신고 - 중간양수인은 수출화물을 최종양수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주로 판매자나 구입자) 또는 최종양수인의 대리인으로서 외국에서 활동하는 자임

<표 Ⅲ-1>의 계속

구분	종류	상세
조건부 정보	FTZ Identifier	자유무역지역(FTZ)에서 물품이 반출되고 소비용으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FTZ Identifier를 신고
	하역될 외국항 (Foreign Port of Unlading)	수출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이 제거되는 나라의 외국항으로서 목적지국에 소재할 필요는 없음
	수출허가번호, CFR Citation, KPC 번호	상무부 BIS, 국무부 DDTC, 재무부 OFAC, 법무부 DEA, 핵규제위원회 등이 부여하는 허가번호, 승인번호, 주석
	수출규제분류번호 (ECCN)	상업규제리스트(CCL)에서 물품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번호
	측정보조단위 (Secondary Unit of Measure)	Schedule B나 HS코드(HTS)에 기재된 Secondary Quantity와 일치하는 측정단위
	보조양 (Secondary Quantity)	측정보조단위와 일치하는 단위들의 합계
	자동차확인번호/제품번호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Product ID)	신고된 중고차에서 발견되는 확인번호
	Vehicle ID Qualifier	신고된 중고차번호의 유형을 구분하는 Qualifier
	자동차 등록번호 (Vehicle Title Number)	자동차등록청이 발급한 번호
	자동차등록증 주정부 코드 (Vehicle Title State Code)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는 주정부나 지역의 2-Character 우편번호
	수입번호 (Entry Number)	
	운송참조번호 (Transportation Reference Number)	해상운송을 위한 예약번호, 항공운송장 번호, 철도운송에 대한 BL 번호, 트럭운송을 위한 Freight or Pro Bill Number를 신고
	국무부 요건 (Department of State Requirements)	DDTC 등록번호, DDTC 중요군수설비표시, DDTC 적격당사자증명표시, DDTC USML 유형코드, DDTC 측정단위, DDTC did, DDTC 면제번호, DDTC 수출허가라인번호
김벌리 프로세스 증명(Kimberley Process Certificate; KPC) <sup>1)</sup> 번호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KPC 협회에서 발행한 고유의 KPC 번호	
선택적 정보	봉인번호 (Seal Number)	설비나 컨테이너에 표시된 보안봉인번호
	설비번호 (Equipment Number)	컨테이너 또는 이글루 번호와 같이 운송설비별 확인번호를 신고

주: 1) 무기조달 자금원인 다이아몬드원석 거래차단을 위해 국제협약  
 자료: 15 CFR 30.6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Data Elements

## 라. 수출자 및 운송인의 의무

- 수출자는 수출신고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sup>15)</sup> 대상이라는 증명자료를 주석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sup>16)</sup>
  - 수출자는 위의 증명자료를 선하증권(Bill of Lading), 화물항공운송장(Air Waybill), 수출선적지시서(Export Shipping Instruction) 또는 기타 상업적재서류(Commercial Loading Document)의 첫 페이지에 주석처리하고 수출운송인에게 제공해야 함
    - 사후신고 대상이라는 증명자료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주석처리해야 함
  - 이에 운송인도 운송인의 출항적하목록(Outbound Manifest)에 수출신고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 대상이라는 증명자료를 주석처리해야 하며, 수출항에서 관세청 담당자에게 이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 운송인은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사실 또는 수출신고면제 대상이라는 증명자료를 제공받지 않으면 화물을 적재할 수 없음<sup>17)</sup>
  - 운송인은 관세청이 위험도가 높은 물품으로 선별하여 통보한 화물의 검사를 위해 동 화물을 관세청에 인도할 의무가 있음
  - 만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된 화물이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에는 관세청은 수출운송인에게 국제운송인담보(International Carrier Bond)조건에 따라 화물을 회송시켜 관세청에 인도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마. 수출통관시스템의 이용방식

- 수출통관시스템의 이용방식은 AES Participation과 AESDirect로 구분
  - AES Participation은 관세청 컴퓨터시스템과 접속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개발이나 구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문제되었

15) 대외무역법시행규칙 §30.35~30.40은 전자수출정보(EEI) 신고의무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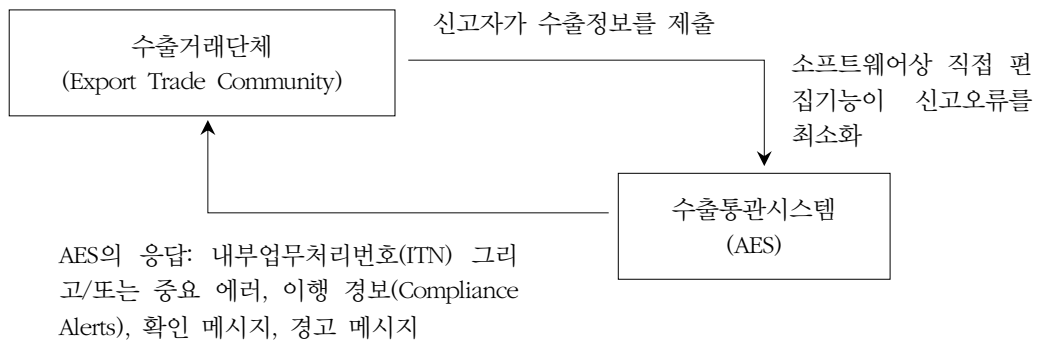
16) 대외무역법시행규칙 §30.7(b)

17) 관세법시행규칙 §192.14(C)(4)

음<sup>1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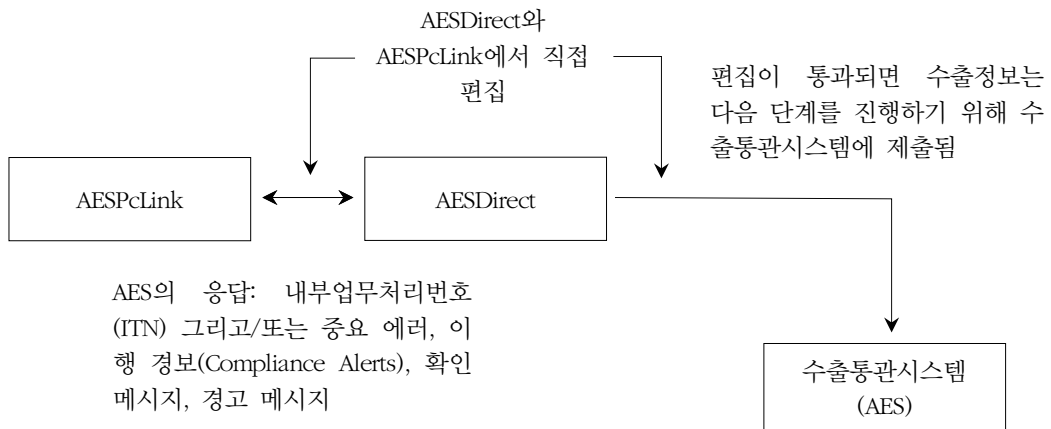
- 이에 따라 통계청이 개발한 것이 무료 인터넷접속프로그램인 AESDirect임
  - AESPcLink를 컴퓨터에 설치하면 AESDirect에 접속하여 AES로 수출신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그림 Ⅲ-1〉 AES Process Flow



자료: U.S. Census of Bureau, Automated Export System Compliance Review Program: Best Practices, p.21

〈그림 Ⅲ-2〉 AESDirect/AESPcLink Process Flow



자료: U.S. Census of Bureau, "Automated Export System Compliance Review Program: Best Practices," p. 21

18) <http://www.fcsn.gov/01papers/Woods.pdf>

- 수출통관시스템 이용방법은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제출, 접속방법 선택, 인증(Certification)의 3가지 절차를 거침<sup>19)</sup>
  - 첫째 단계로서 의향서(LOI)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관세청 및 통계청 성과요건과 운영기준에 대한 개발, 유지 및 준수하기로 하는 약속을 제시
    - 의향서는 온라인으로 제출될 수 있음
    - AESDirect 사용자는 이미 등록과정에서 의향서 제출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의향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둘째 단계로서 AES 접속방법에는 고유의 AES 프로그램 개발, AES 인증 소프트웨어 구입, 유료 AES service center 이용, 무료 AESDirect 이용이 있음
  -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출자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자료를 전송하고 AES에서 전송받는지를 확인하는 접속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게 됨

## 2. 수출규제제도<sup>20)</sup>

### 가. 개요

- 9. 11사태 이후 미국 물품과 기술의 국제적 거래를 합법화하며, 이들 물품이 무기 거래상과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각종 수출규제(Export Control) 조치가 내려짐
  - 이는 합법적인 수출거래자에 대해 수출규제와 반불매(Antiboycott) 요건을 준수하도록 돕고 위반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한편, 고의적인 수출위반에 대해 심판하는 조치임
- 수출규제의 주요 근거법령은 수출행정법(Export Administration Act; EAA)과 수출행정시행규칙(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임
  - 수출행정법(EAA)은 상무부의 수출규제와 반불매 준수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

19) [www.cbp.gov/xp/cgov/trade/automated/aes/easy\\_steps.xml](http://www.cbp.gov/xp/cgov/trade/automated/aes/easy_steps.xml)

20) DOC, Introduction to the commerce department's export controls, 2007

로서 산업보안국에 대해 규정을 제정하고 국가안보, 외교정책과 단기공급을 위한 수출규제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

- 수출행정시행규칙(EAR)은 대외무역법 시행규칙의 Part. 730~774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출행정법 및 기타 법령상 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가 제정

□ 수출행정시행규칙(EAR)은 대부분 상업용 물품의 수출과 재수출을 규제

- 물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상업용과 군사용을 겸비한 물품은 이중 용도(Dual-use)로 분류하여 규제
  - 그러나 명백한 군사용이 아닌 순수 상업용 물품도 수출행정시행규칙(EAR)의 적용을 받음

## 나. 수출허가제도

### 1) 수출방식

- 미국의 수출규제는 수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출허가 여부는 각 수출거래별로 수출품의 종류, 목적지국, 수입자,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판단

#### 가) 허가불요(No License Required; NLR)

- 대부분의 수출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불요(NLR)로 지정하여 수출
  - 선적된 물품이 상업규제리스트(CCL)에 없는 경우 또는 물품이 상업규제리스트에 있지만 해당 목적지국에 대한 규제이유(Reason for Control)란에 X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
  - 반면, 일부 거래에서는 해당 목적지국이 통상금지의 대상이거나 최종 사용자(End-user) 또는 최종 사용(End-use)을 이유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 나) 허가 예외(License Exception)

- 수출행정시행규칙(EAR) Part 740에 허가 예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 수출물품이 수출예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서류에 허가 예외의 유형(예를 들어, Shipments of Limited Value(LVS), Shipments to Country Group B Countries(GBS), Temporary Imports · Exports and Reexports(TMP))를 표시

#### 다) 허가(License)

- 수출물품이 수출허가대상인 경우 수출자는 산업보안국(BIS)에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함
  - 수출허가가 부여되면 해당 수출서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게 됨
  - 일반적으로 산업보안국(BIS)이 발행한 허가는 2년간 유효함

### 2) 수출허가신청의 준비과정<sup>21)</sup>

- 수출자가 수출신고와 선적을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해당수출이 상무부 관할인지 확인
  - 둘째, 상업규제리스트(Commerce Control List; CCL)를 확인하여 해당 수출물품에 대응하는 수출규제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를 확인
    - 수출행정법(Export Administration Act)에는 수출물품 이름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수출규제분류번호가 분류되어 있음
  - 셋째, 상업규제리스트상 해당 수출물품에 해당하는 규제사유(Reason for Control)를 확인
    - 규제사유에는 반테러리즘(AT), 생화학적 무기(CB), 범죄규제(CC), 화학무기협정(CW), 압호화물건(EI), 폭발물협정(FC), 미사일기술(MT), 국가안보(NS), 핵확산방지(NP), 지역안정(RS), 단기공급(SS), UN통상금지령(UN), 중요물자(SI), 비

21) 미상무부, Introduction to the commerce department's export controls, March, 2007.

밀청취(SL)이 있음

- 넷째, 허가 필요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통상국차트(Commerce Country Chart)와 수출규제분류번호(ECCN)를 상호 참조
  - 만일 허가가 필요하다면 허가신청 전에 허가예외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것
- 다섯째, 해당수출거래에 금지된 최종 사용자(End-user)나 최종 사용(End-use)<sup>22)</sup>이 개입되었는지를 확인
  - 만일 최종 사용자나 최종 사용이 개입된 경우 거래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또는 허가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
- 마지막으로 선박수출신고서와 같은 수출서류에 정확한 수출규제분류번호(ECCN)와 적절한 기호(예를 들어, 허가 불요, 허가 예외, 허가번호와 유효기간)를 기재하여 물품을 수출

### 3) 상업용 수출허가대상 여부 판별기준

- 대부분의 상업용 수출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일부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내역, 목적지국, 수입자, 사용 용도 등 수출내용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됨

#### 가) 수출물품내역

- 수출허가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물품이 특정한 수출규제분류번호(ECCN)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짐
  - 모든 수출규제분류번호(ECCN)는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된 코드(예를 들어, 3A001)로 특정 물품, 물품의 유형을 기술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규제방식

22) 최종 용도 및 최종 사용자 확인의무를 수출기업에 부과하고 있는 'Catch-all' 제도는 미국, 캐나다, EU, 일본, 우리나라 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 운영하고 있다. 'Catch-all' 제도는 다자 간 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리스트 통제 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파괴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 제도는 일반 민수물자가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용도로 공급되는 것을 완전 차단하기 위하여 수입자 및 최종 사용자에 대한 수요자 요건과 이중 용도로의 이용 가능성을 심사하여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와 수출자가 협력하여 수출을 거부하는 체제이다.

을 보여줌

- 이는 상업규제리스트(CCL)에 표시되어 있는데, 상업규제리스트는 <표 Ⅲ-2>와 같이 10개의 범주로 나뉘고 각 범주는 5개의 상품그룹(Product Groups)으로 세분됨

<표 Ⅲ-2> 상업규제리스트(CCL) 분류

범주 번호	범주 (Category)	상품그룹 (Product Groups)
0	핵물질, 핵시설, 핵장비	A. 시스템, 설비, 부품 B. 시험, 검사, 생산 장비 C. 재료 D. 소프트웨어 E. 기술
1	공업원료, 화학물질, 미생물 및 독소	''
2	소재공정	''
3	전자장치	''
4	컴퓨터	''
5	통신 및 정보보안	''
6	센서 및 레이저	''
7	내비게이션 및 항공전자기기	''
8	해양	''
9	추진시스템, 우주선 및 관련장비	''

자료: Export Administration Act §738.2 Commerce Control List Structure

- 물품 분류는 수출자가 직접 하거나, 제조자와 함께 확인하거나 산업보안국(BIS)에 수출규제 분류번호(ECCN)를 결정해주도록 분류요청을 제출할 수 있음
  - 해당물품이 수출규제 분류번호에 의해 특정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상업규제리스트(CCL)를 검토할 때, 먼저 상업규제리스트의 10개의 범주 중 어디에 속하는지 결정하고 난 후 적용가능한 상품그룹(Product Groups)을 고려함

사례) 법집행기관을 보조하기 위한 용도로 복사기(Polygraphs)를 수출하려는 경우 복사기의 수출규제 분류번호는 어떻게 될까?

전자장치는 대분류번호가 3, 설비에 적용되는 상품그룹은 A로서 상업규제리스트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이 제품은 다음과 같이 3A981에 해당

**3A981 Polygraphs** (except biomedical recorders designed for use in medical facilities for monitoring biological and neurophysical responses); fingerprint analyzers, cameras and equipment, n.e.s.; automated fingerprint and identification retrieval systems, n.e.s.; psychological stress analysis equipment; electronic monitoring restraint devices; and specially designed parts and accessories, n.e.s.

**License Requirements**

Commerce Control List Supplement No. 1 to Part 774 Category 3—page 23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December 11, 2009

*Reason for Control: CC*

*Control(s) Country Chart*

CC applies to entire entry CC Column 1

**License Exceptions**

LVS: N/A

GBS: N/A

CIV: N/A

**List of Items Controlled**

*Unit: Equipment in number*

*Related Controls: N/A*

*Related Definitions: N/A*

*Items:*

The list of items controlled is contained in the ECCN heading.

- 해당 물품이 상업규제리스트(CCL)에 없는 경우 'EAR 99'로 지정됨
  - EAR 99 물품은 일반적으로 저기술 소비재로 구성되며 많은 경우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EAR 99 물품을 수출할 예정으로 해당 수출이 금지국가에 대한 것이거나 금지된 최종 사용(End-use)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가가 요구될 수 있음

나) 목적지국

- 수출이 제한되는 대부분의 목적지는 수출금지국가들과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수단, 시리아와 같이 테러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정된 국가들임
  - 그러나 일부 상품은 모든 국가에 대해 수출제한이 적용되기도 함
  
- 물품이 분류된 다음 단계로 규제이유(Reason for Control)와 최종 목적지국에 근거하여 수출허가 필요여부를 판단
  - 해당물품에 대한 규제이유와 목적지국에 근거한 표시란에 X표시가 있다면 허가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허가가 필요함
  - 반면, X표시가 없다면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에 수출하지 않는 이상 수출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음

〈그림 Ⅲ-3〉 통상국 차트

Commerce Control List Overview and the Country Chart

**Commerce Country Chart**  
Reason for Control

Countries	Chemical & Biological Weapons			Nuclear Nonproliferation		National Security		Missile Tech	Regional Stability		Firearms Convention	Crime Control			Anti-Terrorism	
	CB 1	CB 2	CB 3	NP 1	NP 2	NS 1	NS 2	MT 1	RS 1	RS 2	FC 1	CC 1	CC 2	CC 3	AT 1	AT 2
Guyana	X	X		X		X	X	X	X	X	X	X		X		
Haiti	X	X		X		X	X	X	X	X	X	X		X		X
Honduras	X	X		X		X	X	X	X	X	X	X		X		X
Hong Kong	X	X		X		X		X	X	X		X		X		
•Hungary	X					X		X	X							
•Iceland	X			X		X		X	X							

자료: 미 상무부, "Introduction to the commerce department's export controls," p. 5

다) 수입자

- 다음과 같이 일부 개인과 단체에 대해 미국 수출품의 수취를 금지하고,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물품이더라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물품을 받을 수 있음
  - 단체목록(Entity List - EAR Part 744, Supplement 4)

- 이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관련된 활동에 가담하는 것으로 산업보안국(BIS)의 지정을 받은 단체에 대한 목록임
- 재무부의 특별지정국 및 봉쇄자(Blocked Persons) 목록(EAR Part 764, Supplement 3)
  - 이는 제한 국가를 옹호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테러와 마약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과 단체로 구성된 국외자산규제(Foreign Assets Control)로서 재무부가 관리하는 목록임
- 미확인 목록(Unverified list)
  - 미확인 목록은 산업보안국(BIS)이 최종사용(End-use) 체크를 완성할 수 없는 회사들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회사들에 수출하게 되면 수출 전에 수출자는 검사(inquire)받을 의무를 지게 됨

#### 라) 사용 용도

- 일부 최종사용(End-use)은 금지되는 반면, 허가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물품 여하에 상관하지 않고 특별한 승인 없이 대량파괴 무기와 미사일 확산에 가담된 특정 단체에 수출할 수 없음

### 다. 수출규제조직<sup>23)</sup>

#### 1) 수출규제조직 체계

-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은 국가안전보장, 국토안보, 대외정책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행정시행규칙(EAR)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
  - 산업보안국 이외에도 다른 미국 정부기관이 보다 특화된 수출을 규제함
    - 국무부는 방위물자와 방위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무기수출을 규제하고, 에너지부는 특정 핵물질의 생산과 관련된 기술의 수출과 재수출을 규제하며, 재무부는 특정한 통상금지를 집행함

23) 산업보안국 홈페이지, [www.bis.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index.htm](http://www.bis.doc.gov/complianceandenforcement/index.htm)

– 수출행정시행규칙(EAR) Supplement No.3 to Part 730에 유관기관 리스트가 있음

〈표 Ⅲ-3〉 미국의 수출규제 담당기관

소속	담당기관	통제내용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수출행정시행규칙(EAR)의 집행
	특허청 내 허가 및 심사(DTC)	외국으로 보내지는 특허신청 자료를 감독
국무부	군수거래통제국	방위 서비스 및 방위(군수품) 물자에 대한 허가
재무부	국외자산통제사무소	표적대상인 외국, 테러를 후원하는 단체, 국제적인 마약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인 제재와 무역제재를 집행
핵규제위원회(독립기관) 내 국제프로그램사무소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허가
에너지부	무기통제 및 비확산사무소 내 수출통제부서	핵기술 및 핵에너지 및 특수 핵물질에 대한 기술적 정보에 대한 허가
	연료프로그램사무소	천연가스 및 전력에 대한 허가
국방부	방위기술보안청	국방부의 방위 관련 물품·서비스·기술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기술보안정책 개발과 집행을 담당
내무부	미국 어류 및 야생생물 서비스	야생 생물, 위기에 처하고 멸종위기에 직면한 종의 수출입
법무부	마약단속국 내 전환통제사무소의 수출입부문	규제물질의 수출과 규제물질법(Cotrolled Substances Act)에 의한 규제물질의 생산에 사용되는 열거된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부	식품의약국 내 준수사무소	미승인 의약기구의 수출
	식품의약국 내 수출입부문	약에 대한 허가
환경보호청(독립기관) 내 고형폐기물사무소의 국제운송부문		유해폐기물 수출에 대한 규제

- 미국은 수출규제법령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선적 조사, 수출규제법령의 잠재적 위반여부 조사, 제재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 수출규제 집행기관들은 복잡한 법령체계에 근거하여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활동이 여러 기관의 관할에 속해 수출규제시스템을 복잡하게 하는 원인이 됨

〈표 Ⅲ-4〉 주요 활동별 수출규제기관

소속기관		항구검사 <sup>1)</sup> (Inspection at U.S. ports)	조사 (Investigation)	제재조치 <sup>2)</sup> (Punitive action)
상무부	산업보안국(BIS)			○
	수출규제실(OEE)		○	
국토안전부	관세청(CBP)	○		
	이민세관집행국(ICE)		○	
법무부	연방검찰			○
	연방수사국(FBI)		○	
국무부	군수거래통제국			○

주: 1) CBP와 ICE 모두 항구검사 권한이 있지만, 이 분야는 CBP가 주로 역할을 수행

2) 제재조치는 수출규제법령의 잠재적 위반자에 대한 형사상 제재(징역, 벌금, 몰수)와 행정상 제재(과태료, 수출허가보류, 수출제외 또는 수출거부)를 의미

자료: GAO, "Export Controls - Challenges Exist in Enforcement of an Inherently Complex System," p. 8

□ 수출예정인 물품에 대한 검사(Inspections)는 주로 국경관리책임자로서 각 공항, 항구, 국경을 관할하는 관세청의 책임임

○ 이들 물품의 수출규제법령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청은 선적 전에 허가서와 물품을 대조하고, 선별적으로 항구와 보세창고에서 물리적 검사를 실시하며, 의심 선적을 유치하여 불법수출될 물품을 압류함

○ 또한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수출허가서에서 허가된 전체 양과 금액을 초과하는 선적의 양과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

○ 한편, 상업용 허가서는 허가된 양과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용인한도를 두고 있는데, 관세청은 이러한 용인한도 초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단을 보유하지는 않음<sup>24)</sup>

□ 이중 용도 물품에 대한 수출규제법령의 잠재적 위반여부 조사(Investigation)는 수출규제과(OEE), 이민세관집행국(ICE), 연방수사국(FBI)이 담당

○ 방위물자 관련 수출법령위반 조사는 이민세관집행국, 연방수사국에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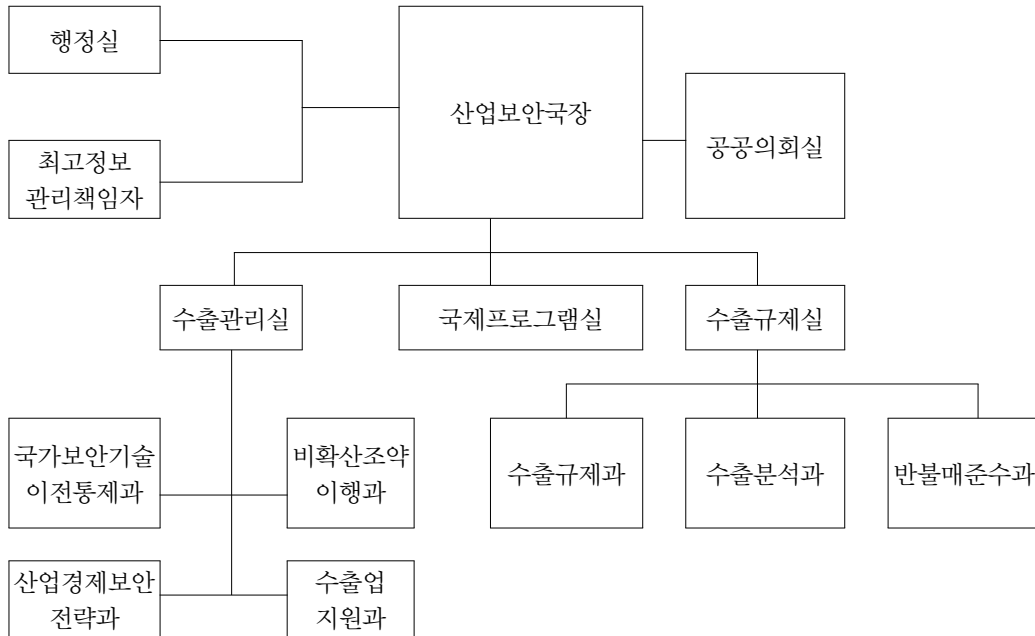
24) GAO, "Export Controls - Challenges Exist in Enforcement of an Inherently Complex System," GAO-07-265, December 2006, p. 9

-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형사사건에 대해 연방검찰은 법무부 내 안보부서와 협의하에 기소하게 됨
  - 한편, 행정상 제재에는 과태료, 수출허가 보류, 수출거부 또는 수출제외가 있는데, 주로 국무부와 상무부가 부과함

## 2) 산업보안국의 수출규제

- 산업보안국(BIS)의 수출규제실(Export Enforcement; EE)은 전문적인 법집행기관으로서 예방 활동과 조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수출행정규정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형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를 가함
  - 예방 활동과 조사 활동을 수행할 때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다른 연방 법집행기관과 함께 작업
  - 또한 위반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형사상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법무부와 공조하며, 민사금전벌(Civil Fines)을 부과하고 수출특혜를 부인하기 위해 상무부 소속인 산업보안 법무자문실(Office of Chief Counsel for Industry and Security)과 함께 작업함
  - 수출규제실(EE)은 수출규제과(Office of Export Enforcement; OEE), 수출분석과(Office of Enforcement Analysis; OEA), 반불매준수과(Office of Antiboycott Compliance; OAC)로 구성됨

〈그림 Ⅲ-4〉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조직도



가) 수출규제과

- 수출규제과(OEE)는 위험인물에게 민감한 물품들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데, 수출단체와 협조하여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
  - 수출규제실은 본사에서 총괄운영을 담당하며 9개의 지역<sup>25)</sup>에서 활동

① 조사업무

- 수출규제과의 조사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정보와 인지를 통해 착수하며,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이중용도 수출을 통제하는 법령의 위반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루어짐
  - 수출규제과의 특수요원(Special Agents)은 체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소환장

25) 보스턴, 시카고, 델러스,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욕, 새너제이, 워싱턴DC

송달, 불법수출품에 대한 압류 권한을 가짐

## ② 감시 프로그램

- 대부분의 최종 사용(End-use)에 대한 점검은 감시프로그램(Sentinel Program)을 통해 집행
  - 수출규제과 소속의 훈련된 특수요원이 민감한 규제물품에 대한 최종 사용자(End-user)를 방문하여 허가 조건에 맞게 수출품이 사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배치됨
    - 감시팀은 미국 원산지 물품과 기술을 받은 외국 최종 사용자(End-user)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Diversion Risk를 위해 허가 신청을 유보한 예비 최종 사용자를 평가하며, 국외무역단체에 교육지원활동을 수행

## ③ 준수유도 업무

- 자발적인 수출규제 준수는 산업보안국의 수출행정프로그램과 수출규제프로그램의 중요 요소임
  - 수출무역단체와 함께 우수 준수사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반면, 잠재적인 불법 수출활동에 대한 경고를 강화하고 수출위반행위를 규명하는 작업을 수행

## ④ 임시부인명령

- 임시부인명령(Temporary Denial Order)은 수출규제과장이 발부하며, 임박한 또는 계속되는 수출규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또는 개인의 모든 수출특혜를 부인하게 됨
  - 이 명령은 갱신기간인 180일 동안 일방적으로 발부되며, 미국으로부터 수출할 권리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수출을 받거나 수출에 참여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것임

⑤ §11(h) 부인

- 수출행정법(EAA) §11(h)에 의하면 상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수출행정법,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무기수출규제법 §38 또는 일부 스파이 관련 규정 위반의 혐의가 있는 자는 혐의일로부터 10년까지 수출행정법에 의해 발부되는 수출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할 자격이 없음
  - 또한 동법은 상무부 장관이 혐의시점에 당사자가 가진 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

⑥ 위반 예상행위의 자진공개

- 산업보안국은 수출행정시행규칙(EAR)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당사자들에 의한 자진공개(Voluntary Self-Disclosure: VSDs)를 장려함
  - 자진공개(VSDs)는 미국 수출규제요건을 준수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지에 대한 훌륭한 지표이자 계속되는 다른 위반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산업보안국은 접수받은 자진공개(VSDs) 신청건을 심사하여 수출규제규정 위반여부와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결정함
  - 대부분의 자진공개(VSDs) 사건은 과태료 부과 외의 수단으로 해결
    - 2006년에 접수받아 종결한 자진공개(VSDs) 중 52%가 위반행위 없음, 48%가 경고장 발부로 종결됨

나) 수출분석과

- 수출분석과(OEA)는 수출거래가 수출행정법(EAA)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확인에 초점을 둠

① 사전허가 확인 및 최종 사용 조사

- 수출분석과는 모든 수출허가 신청을 확인하며, 중개위원회가 Diversion Risk의 평가, 잠재적인 위반의 확인, 규제대상인 미국 원산지 물품이나 기술자료를 받는 자에 대한

신뢰성 판단을 위해 허가 신청을 심사함

- 일부 경우에는 알려진 최종 사용자에 대해 특별히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해당 거래와 최종 사용자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전허가 조사(Pre-license Check)가 이루어짐
- 선적 후 검사(Post-shipment verification)는 미국 정부가 수출된 물품이 미국 수출규제규정과 수출허가 조건에 따라 사용되고 있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함

### ② 국외 수출규제원 프로그램

□ 산업보안국은 경험이 풍부한 상무부 특별요원을 주요 미국 대사관(베이징, 홍콩, 아부다비, 뉴델리, 모스크)에 있는 수출규제원(Export Control Officers; ECOs)으로서 국외로 파견함

- 수출규제원(ECOs)의 주요임무는 해당 지역에 반입된 미국 이중 용도 물품이 미국 수출규제법령을 준수하여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임
- 해당 정부와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과 함께 선별된 최종사용 조사를 통해 미국 수출규제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준수확인(Compliance Verification)이 수행됨
- 또한 수출규제원(ECOs)은 미국 이중 용도 수출규제 요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보와 적절한 훈련을 제공하고 스스로 수출규제능력을 개발시키도록 해당 정부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들과 함께 작업함

### ③ 미확인 목록(Unverified List) 게시

□ 미국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사유로 산업보안국이 사전허가조사나 선적 후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었던 외국인의 이름과 국가가 미확인 목록(Unverified List)에 게시됨

- 이 목록은 산업보안국이 최종 사용자, 중간 양수인, 최종 양수인, 해당 수출거래의 다른 상대방의 존재와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수출거래에 개입된 자들을 포함
- 미확인 목록에 게시된 자가 거래 상대방인 모든 거래는 산업보안국에 의해 경고

(Red Flag)로 간주됨<sup>26)</sup>

④ 선박수출신고(SED) 심사 프로그램

- 수출분석과는 과거 선적에 대한 선박수출신고(Shipper's Export Declarations; SED)<sup>27)</sup>를 선별·심사하여 수출행정규정에 위반할 수 있는 사건을 확인하고 추가조사를 위해 이를 수출규제과에 송부함
  - 선박수출신고에 대한 일상적인 심사에 근거하여 매년 백여건의 수출규제위반의 심사건이 조사되고 있음

⑤ 비자신청 심사 프로그램

- 비자신청 심사 프로그램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규제된 미국 기술이나 기술적 자료에 승인없이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됨
  - 수출규제실은 수출행정규정의 위반가능성을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비자신청서의 정보를 심사
  - 이 프로그램하에 수출규제실은 국무부에 기술규제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도록 제의하고, 수출규제과의 특수요원에 의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을 초청한 미국 거래 상대방을 확인

다) 반불매준수과(OAC)

- 반불매준수과는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적절한 행정상 또는 형사상 제재를 가하여 수출행정법의 반불매규정의 이행을 보장
  - 또한 제재받지 않은 해외 불매활동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고 광범위한 공공교육과 반불매 사건에 대한 상담을 수행함

---

26) 대외무역법시행규칙 Part 732-Supplement No.3

27) 2008년 10월 1일 이후 폐지

- 반불매준수과는 전화, 이메일 및 무역단체와 금융사에 대한 강연을 통해 법령의 적용에 대한 광범위한 가이드와 불매활동에 대한 동향을 수출단체에 제공
  - 예방조치가 실패하는 경우, 불매 관련 정보의 제공,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업체와의 거래 거절, 지역 또는 국가에 기초한 불매 목적의 차별이 있는 사건에서 형사 및 행정상 제재를 부과함

## IV. 결 론

- 9.11테러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무역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주요 국제기구 및 외국의 세관들을 중심으로 통관의 신속성과 더불어 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미국은 무역 화물보안 확보를 위한 각종 법률도 제정하였음
    - 9.11테러 이후 화물보안 법률인 “2007년 911 위원회 이행법안(Implementing the 9/11 Commission Recommendation Act of 2007), 항만 보안 및 책임에 관한 법률 (Security and Accountabilty For Every Port Act) 등
  
- 미국의 수출통관절차는 선진화된 수출통관시스템(AES)을 통해 수출통관의 간소화와 수출물품의 안정성확보에 기여함
  -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편집이 가능하고, 수출신고 즉시 오류가 감지되어 수정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수출관련 법령의 준수를 보장하는 한편, 전자적으로 집계된 수출선적자료를 통해 무역 통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됨
  
- 미국은 수출규제를 통해 미국 물품과 기술이 국제적 거래를 합법화하였음
  - 수출규제의 중 근거법령은 수출행정법과 수출행정시행규칙임
  - 수출규제는 수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수출허가 여부는 각 수출거래별로 수출품의 종류, 목적지국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미국은 수출규제법령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기관들이 선적 조사, 수출규제법령의 잠재적인 위반 여부나 제재조치를 포함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 관세청도 국민건강,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위험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우범대상의 체계적인 선별을 위한 ‘관세행정 통합 위험관리시스템’을 2009년에 구축 완료하였음
  - 기존의 업무기능별, 부서별로 수행하던 개별적 위험관리정보(수출입화물 검사적발, 관세탈루 추징, 밀수, 여행자 휴대품 적발, 체납 실적 등)를 통합관리하게 됨
  - 동 시스템은 통합위험선별체계를 통해서 수출입통관, 화물 검사, 출입국 정보 등 복합우범요소를 각 위험대상에 적용하여 실시간, 자동으로 우범화물이나 여행자를 선별 및 감시를 할 수 있음
  
- 점점 복잡하고, 지능적으로 변화하는 관세 범죄유형의 선제적 대처를 위해 다양한 수출물품의 위험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다양한 수출화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미국의 컨테이너 위치 추적 및 불법 개봉 여부를 자동 파악할 수 있는 장치 등의 개발, 화물인증제도 등과 함께 위험화물 수출에 대한 제재를 위한 방안 등이 있음

[부록 1] 대외무역법 시행규칙(CFR Title 15, Subtitle B, CHAPTER VII,  
SUBCHAPTER C)

SUBCHAPTER C—수출행정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PART 730. 종합 정보

- 730.1 이 규정의 적용범위
  - 730.2 법정 권한
  - 730.3 군민 양용의 수출
  - 730.4 기타 관리기관 및 부서
  - 730.5 수출 외의 항목에 대한 적용범위
  - 730.6 관리 목적
  - 730.7 허가 요건 및 예외
  - 730.8 처리방법 및 지원장소(where to get help)
  - 730.9 산업안보국(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기관
  - 730.10 자문 정보
- PART 730의 부록 번호 1; 문서감축법 하의 정부징수 요건: 예산관리국 관리번호  
PART 730의 부록 번호 2; 기술자문위원회  
PART 730의 부록 번호 3; 수출관리 책임이 있는 기타 미국정부 부서 및 기관

PART 732.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 EAR) 이용절차

- 732.1 절차 개관
  - 732.2 EAR 범위에 관한 절차
  - 732.3 10가지의 일반적 금지사항에 관한 절차
  - 732.4 허가 예외에 관한 절차
  - 732.5 운송업자의 수출신고(Shipper's Export Declaration) 또는 자동수출시스템 기록(Automated Export System Record), 목적지관리부(Destination Control Statements), 그리고 문서보존에 관한 절차
  - 732.6 기타 요건에 관한 절차
- PART 732의 부록 번호 1; 의사결정 분지도  
PART 732의 부록 번호 2; EAR의 적용여부(Subject to the EAR?)  
PART 732의 부록 번호 3; 산업안전국의 “고객인지(Know Your Customer)” 지침 및 주의사항

PART 734. EAR의 범위

- 734.1 서문
- 734.2 중요한 EAR 용어 및 원칙

- 734.3 EAR이 적용되는 항목
  - 734.4 미국의 미소기준 항목(De minimis U.S. content)
  - 734.5 EAR이 적용되는 미국인과 외국인의 활동
  - 734.6 허가와 기타 요건의 결정 시 BIS로부터의 이용가능한 지원
  - 734.7 문헌정보 및 소프트웨어
  - 734.8 기초연구로 인한 정보
  - 734.9 교육 정보
  - 734.10 특허 출원
  - 734.11 계약 관리에 의한 정부 후원 연구
  - 734.12 외국법과 규정의 효력
- PART 734의 부록 번호 1; 질의 및 답변 - EAR이 적용되는 기술 및 소프트웨어  
 PART 734의 부록 번호 2; 미소기준 규칙에 대한 지침

#### PART 736. 일반적 금지사항

- 736.1 서문
  - 736.2 일반적 금지사항과 적용가능성의 결정
- PART 736의 부록 번호 1; 일반 명령  
 PART 736의 부록 번호 2; 행정 명령

#### PART 738. 상업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개관 및 상업국가표

- 738.1 서문
  - 738.2 CCL 체계
  - 738.3 상업국가표 체계
  - 738.4 허가의 필요성 여부 결정
- PART 738의 부록 번호 1; 상업국가표

#### PART 740. 허가 예외

- 740.1 서문
- 740.2 모든 허가 예외에 대한 제한
- 740.3 제한된 가치 수송(Shipments of limited value, LVS)
- 740.4 국가 그룹 B 국가로의 수송(Shipments to Country Group B countries, GBS)
- 740.5 국내 최종수요자(Civil end-users, CIV)
- 740.6 제한 하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Technology and software under restriction, TSR)
- 740.7 컴퓨터(APP)
- 740.8 [개정됨]
- 740.9 임시 수입, 수출, 그리고 재수출(Temporary imports, exports, and reexports, TMP)
- 740.10 부품과 장비의 공급 및 교체(Servicing and replacement of parts and equipment, RPL)
- 740.11 화학무기 금지조약 하의 정부,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적 차원의 조사(Governments,

-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international inspections under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GOV)
- 740.12 선물 소포 및 인도주의적 기부(Gift parcels and humanitarian donations, GFT)
- 740.13 기술 및 소프트웨어-제한 없음(Technology and software - unrestricted, SU)
- 740.14 수하물(Baggage, BAG)
- 740.15 항공기 및 선박(Aircraft and vessels, AVS)
- 740.16 추가 허용 재수출(Additional permissive reexports, APR)
- 740.17 암호화 상품,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술(Encryption commodities, software, and technology, ENC)
- 740.18 농산품(Agricultural commodities, AGR)
- 740.19 소비자 통신장치(Consumer Communications Devices, CCD)
- PART 740의 부록 번호 1; 허가 예외 GOV 이용의 추가제한
- PART 740의 부록 번호 1; 국가 그룹
- PART 740의 부록 번호 2; 인도주의 허가 예외 하에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기부된 품목
- PART 740의 부록 번호 3; 허가 예외 ENC 우호적 조치 국가

## PART 742. 관리 정책 – CCL 기준 관리

- 742.1 서문
- 742.2 생화학 무기의 확산
- 742.3 핵 비확산
- 742.4 국가 안전보장
- 742.5 미사일 기술
- 742.6 지역 안정
- 742.7 범죄 관리
- 742.8 테러 방지: 이란
- 742.9 테러 방지: 시리아
- 742.10 테러 방지: 수단
- 742.11 고문, 엄지 손가락을 죄는 고문, 그리고 thumbcuffs; 그리고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 부품 및 부속품
- 742.12 [개정됨]
- 742.13 통신 도청장치
- 742.14 중요 품목: 상업용 항공기 엔진, 부품, 그리고 시스템의 개발, 생산 또는 정비를 위한 고온부 기술
- 742.15 암호화 품목
- 742.16 [개정됨]
- 742.17 OAS 회원국에의 소화기 수출
- 742.18 화학무기 금지조약(CWC 또는 조약)
- 742.19 테러 방지: 북한
- PART 742의 부록 번호 1; 생화학 무기의 비확산

PART 742의 부록 번호 2; 테러 방지 관리; 북한, 시리아 그리고 수단 계약 SANCTITY 날짜와 관련 정책  
 PART 742의 부록 번호 3; [개정됨]  
 PART 742의 부록 번호 4; [개정됨]  
 PART 742의 부록 번호 5; 암호 등록  
 PART 742의 부록 번호 6; 암호화 품목에 관한 기술적 질의  
 PART 742의 부록 번호 7; 주요무기 시스템 설명  
 PART 742의 부록 번호 8; 암호화 품목에 대한 자체분류 보고서

### PART 743. 특별 신고

743.1 바세나르 협약  
 743.2 고성능 컴퓨터: 선적 후 확인(verification) 신고  
 743.3 열화상 카메라 신고  
 PART 743의 부록 번호 1; 바세나르 협약 참여국

### PART 744. 관리 정책: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 기준

744.1 일반 조항  
 744.2 특정 핵의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  
 744.3 특정 로켓 시스템(탄도 미사일 시스템과 우주 발사체와 탐사 로켓을 포함)과 무인 비행체(크루즈 미사일 시스템, 표적기 그리고 무인 정찰기를 포함)의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  
 744.4 특정 생화학 무기의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  
 744.5 특정 해상핵 추진의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  
 744.6 미국인의 특정 활동에 대한 제한  
 744.7 특정 국외선박 또는 항공기의 사용을 위한 특정 수출에 대한 제한  
 744.8 대통령 명령 13382-대량살상 확산자와 그 후원자의 무기 소유 금지-에 따라 지정된 사람들에게 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제한  
 744.9 [개정됨]  
 744.10 러시아의 특정 단체(entities)에 대한 제한  
 744.11 미국의 국가 안전보장 또는 대외정책 이해관계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실체에 적용되는 허가 요건  
 744.12 대통령 명령 13224(특정한 세계적 테러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 SDGT))에 따라 지정된 사람에게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제한  
 744.13 대통령 명령 12947(특정 테러리스트(Specially Designated Terrorists, SDT))에 따라 지정된 사람에게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제한  
 744.14 국외 테러리스트 기관(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FTOs)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의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제한  
 744.15 [개정됨]  
 744.16 단체목록(Entity List)에 있는 실체의 제거 또는 변경의 요청절차  
 744.17 '군사 최종 용도' 및 '군사 최종 사용자'를 위한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특정 수출 및 재수출에 대한 제한

- 744.18 대통령 명령 13315에 따라 지정된 사람에게의 수출, 재수출 및 이전에 대한 제한
- 744.19 지정 법령에 따라 설정된 사람에 관한 허가 정책
- 744.20 특정 실체에 적용되는 허가 요건
- 744.21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PRC)의 특정 군사 최종 용도에 대한 제한
- 744.22 대통령 명령 13310, 13448 또는 13464에 따라 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가 금지(blocked)된 사람에게의 수출, 재수출 및 이전에 대한 제한
- PART 744의 부록 번호 1; §744.17의 군사 최종 용도의 예
- PART 744의 부록 번호 2; §744.21의 군사 최종 용도 허가 요건이 적용되는 물품 목록
- PART 744의 부록 번호 3; §744.2(a)의 특정 핵 최종 용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 PART 744의 부록 번호 4; 실제 목록
- PART 744의 부록 번호 5;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 목록 결정을 위한 절차

#### PART 745. 화학무기 조약 요건

- 745.1 1종 화학물질의 다른 국가로의 모든 수출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연차보고
- 745.2 화학무기 조약 하의 최종 용도 확인 신고 요건
- PART 745의 부록 번호 1; 화학물질의 종류
- PART 745의 부록 번호 2;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과 살상이 금지된 조약 당사국
- PART 745의 부록 번호 3; §745.2에 따라 최종 용도 증명의 발급에 대해 책임이 있는 국외 대리인

#### PART 746. 출항 금지 및 기타 특별규제

- 746.1 서문
- 746.2 쿠바
- 746.3 이라크
- 746.4 북한
- 746.5 [개정됨]
- 746.6 [개정됨]
- 746.7 이란
- 746.8 르완다
- 746.9 시리아
- PART 746의 부록 번호 1; 사치품의 예
- PART 746의 부록 번호 2; [개정됨]
- PART 746의 부록 번호 3; [개정됨]

#### PART 747. 특별 이라크 재건 허가

- 747.1 범위
- 747.2 적격 요건
- 747.3 적격 항목
- 747.4 SIRL의 신청을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

747.5 SIRL 신청 검토절차

#### PART 748. 신청(분류, 자문, 허가)과 서류

- 748.1 일반 조항
  - 748.2 서식 획득; 우편 주소들
  - 748.3 요청, 권고 의견, 그리고 부호화 등록 분류
  - 748.4 허가 신청에 관련된 일반 지침
  - 748.5 거래관계자
  - 748.6 허가 신청을 위한 일반 지침
  - 748.7 허가 또는 분류요청에 대한 전산화 신청
  - 748.8 유일한 허가 신청 및 제출 요건
  - 748.9 허가 신청을 위한 지원 서류
  - 748.10 수입 인증과 최종 사용자 보고서
  - 748.11 최종 수탁자와 구매자에 의한 보고서
  - 748.12 지원 서류를 위한 특수조항
  - 748.13 배송 확인
  - 748.14 미주 회원국 단체에 충당되는 소화기 수입 인증
  - 748.12 유효한 최종 사용자 허가서
- PART 748의 부록 번호1; BIS-748P: 파트 748P-: 항목 부록, BIS-748P-B: 실수요자 부록; 다목적 신청 지침 파트 748의 부록 번호2; 유일한 신청 및 의뢰 필요조건
- PART 748의 부록 번호3; BIS-711, 최종 수탁자와 구매자에 의한 보고서
- PART 748의 부록 번호4; 외국 수입 인증/배송 확인, 최종 사용자 보고서체계를 집행하는 증거들
- PART 748의 부록 번호5; 미국 수입 인증과 배송 확인 절차
- PART 748의 부록 번호6; 소화기 약정에 속하는 수입 인증을 발행하는 증거들
- PART 748의 부록 번호7; 최종 사용자 허가서: 최종 사용자 목록, 각각의 수출 적격 항목, 재수출과 양도, 적격 목적지
- PART 748의 부록 번호8; 최종 사용자 허가서를 위한 요청에 필요한 정보들
- PART 748의 부록 번호9; 최종 사용자 검토 위원회 절차

#### PART 750. 신청 절차, 발행, 그리고/또는 거부

- 750.1 범위
- 750.2 분류요청과 권고 의견의 처리
- 750.3 국제결제은행(BIS)과 다른 정부기관 및 부서 의한 인가신청 검토
- 750.4 허가 신청 처리 절차
- 750.5 [예비]
- 750.6 허가 신청 거부
- 750.7 허가 발행
- 750.8 허가 철회 및 정지
- 750.9 중복 인가

- 750.10 수출을 위한 허가양도
- 750.11 운송 허용한계

PART 752. 특수 포괄적인 허가

- 752.1 범위
- 752.2 적합한 활동
- 752.3 적합한 항목
- 752.4 적합한 국가
- 752.5 SCL 신청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
- 752.6 재수출
- 752.7 소비자에 직접적인 출하
- 752.8 SCL신청 검토 절차
- 752.9 SCL신청에 관한 조치
- 752.10 SCL에 변화
- 752.11 내부 통제 프로그램
- 752.12 기록보존 요건
- 752.13 기록검사
- 752.14 시스템검토
- 752.15 수출 통관절차
- 752.16 행정적 조치
- 752.17 국제결제은행(BIS) 주소

PART 752의 부록 번호1; BIS-748P서식 완성을 위한 지침, “다목적 신청”, “특수 포괄적인 · 허가 요청을 위한 보고서”

PART 752의 부록 번호2; BIS-748P-A서식 완성을 위한 지침, “항목 부록”

PART 752의 부록 번호3; BIS-752서식 완성을 위한 지침, “특수 포괄적인 허가 지원을 위한 수탁자에 의한 보고서”

PART 752의 부록 번호4; BIS-752-A서식 완성을 위한 지침, “재수출 영역”

PART 752의 부록 번호5; BIS-748P-B서식 완성을 위한 지침, “최종 사용자 부록”

PART 754. 재고 부족 통제

- 754.1 서문
- 754.2 천연석유
- 754.3 천연석유를 포함하지 않는 석유 제품
- 754.4 가공되지 않은 서양 붉은 삼목
- 754.5 해양 수출을 위한 말
- 754.6 수출 재고 부족 규제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미국 농산물 등록
- 754.7 감시의 과세 또는 재활용 가능한 금속 물질 통제를 위한 청원; 공청회

PART 754의 부록 번호1; 석유 및 석유 제품

PART 754의 부록 번호2; 가공되지 않은 서양 붉은 삼목

PART 754의 부록 번호3; 천연석유 수출 관련 법령 조항

#### PART 756. 탄원

- 756.1 서문
- 756.2 행정 조치로부터의 탄원

#### PART 758. 수출 통관절차 요구조건

- 758.1 화주의 수출 신고 또는 자동화된 수출시스템 기록
- 758.2 자동화된 수출시스템
- 758.3 거래 당사자의 책임
- 758.4 수출허가의 사용
- 758.5 문서 및 품목부리기의 준거
- 758.6 행선지 통제보고서
- 758.7 수출 시행의 관공서 당국, 보안 및 산업 사무국, 허가한 수송에서의 세관 및 우체국장
- 758.8 국제결제은행(BIS) 방침에 따른 화물의 반송 혹 부리기, 수출시행 또는 세관 서비스의 관공서
- 758.9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 및 규칙

#### PART 760. 제한적인 무역 관습 및 보이콧

- 760.1 정의
- 760.2 금지(Prohibitions)
- 760.3 금지에 대한 예외
- 760.4 탈세

#### PART 762. 기록보관

- 762.1 범위
- 762.2 보존되어야 하는 기록
- 762.3 기록보관 요건으로부터 면제되는 기록
- 762.4 필수 원형 기록
- 762.5 원형 기록의 복제
- 762.6 보유 기관
- 762.7 기록 생산 및 검사

#### PART 764. 시행과 보호 방안

- 764.1 서문
- 764.2 위반
- 764.3 인가

- 764.4 위반 보고
- 764.5 자발적인 자기폭로
- 764.6 행정적 보호 방안
- 764.7 리비아로 불법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항목을 포함하는 활동
- 764.8 보이콧 조항들에 대한 자발적인 자기폭로
- PART 764의 부록 번호1; 수출특권을 거부하는 주문의 표준 용어

### PART 766. 행정 시행 절차

- 766.1 범위
  - 766.2 정의
  - 766.3 행정 시행 절차의 단계
  - 766.4 대표
  - 766.5 charging letter 이외의 서류정리 및 문서서비스
  - 766.6 공판을 위한 답변과 요구
  - 766.7 불이행
  - 766.8 요약 결정
  - 766.9 발표
  - 766.10 소환장
  - 766.11 폭로에 대해 보호되는 사건
  - 766.12 예비 공청회
  - 766.13 공청회
  - 766.14 판결의 중간 검토
  - 766.15 공청회 없는 절차
  - 766.16 절차상 약정; 시간 연장
  - 766.17 행정적 법 판단의 결정
  - 766.18 청산
  - 766.19 재개
  - 766.20 문서의 결정 및 유효성을 위한 기록
  - 766.21 탄원
  - 766.22 국장에 의한 검토
  - 766.23 관련인
  - 766.24 일시적 거부
  - 766.25 수출 특권을 거부하는 행정적 조치
- PART 766의 부록 번호1; 행정적 시행 사건의 청산에서 과금 및 처벌 결정에 관한 안내
- PART 766의 부록 번호 2; 반보이콧 문제와 관련한 관리적 시행의 합의에 대한 부과 및 벌칙 결정 지침

### PART 768. 대외 유효성 결정 절차 및 기준

- 768.1 서문
- 768.2 대외 유효성 설명

- 768.3 대외 유효성 평가
- 768.4 평가의 착수
- 768.5 대외 유효성 항목의 제출 및 기술자문위원회 증명서의 항목
- 768.6 기준
- 768.7 절차
- 768.8 비관리국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절차의 적격성
- 768.9 부정적 대외 유효성 결정에 대한 항소
- 768.10 덜 정교한 항목에 대한 통제 제거
- PART 768의 부록 번호 1; 대외 유효성 증거
- PART 768의 부록 번호 2; 신속한 허가 절차에 대해 적격한 항목 [개정됨]

#### PART 770. 해석

- 770.1 서문
- 770.2 항목 해석
- 770.3 국가 그룹 D:1로의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수출과 관련한 해석

#### PART 772. 용어 정의

- 772.1 수출관리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

#### PART 774. 상업관리목록

- 774.1 서문
- 774.2 [개정됨]
- PART 774의 부록 번호 1; 상업관리목록
  - 분류 0 - 핵 물질, 시설 & 장비 (기타 항목)
  - 분류 1 -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독성 물질
  - 분류 2 - 재료 가공
  - 분류 3 - 전산
  - 분류 4 - 컴퓨터
  - 분류 5 (파트 1) - 전기 통신
  - 분류 5 (파트 2) - 정보 보안
  - 분류 6 - 센서와 레이저
  - 분류 7 - 네이게이션 및 항공 전자 기기
  - 분류 8 - 해상
  - 분류 9 - 항공우주산업 및 추진
- PART 774의 부록 번호 2; 종합 기술 및 소프트웨어 설명
- PART 774의 부록 번호 3; 협정 문서

양식 부록

- 양식 BIS-621P, 제한적 거래 관행법 또는 보이콧 단수거래 요청 보고서
- 양식 BIS-645P/ATF-4522/DSP-53, 국제 수출 증명서
- 양식 BIS-647P, 운송 입증 증명서
- 양식 BIS-648P, 운송 입증 요건 통지서
- 양식 BIS-648P, DV 요건 충족에 대한 지침
- 양식 BIS-711, 최종 수탁자 및 구매자의 보고서
- 양식 BIS-748P, 다목적 지원 양식
- 양식 BIS-748P, 다목적 지원 양식 1쪽 작성에 대한 지침
- 양식 BIS-748P, 다목적 지원 양식 2쪽 작성에 대한 지침
- 수출 허가 (견본)
- 양식 BIS-748P-A, 항목 부록
- 양식 BIS-748P-B, 최종소비자 부록
- 양식 BIS-752, 특별 종합 허가를 위한 수탁인의 보고서
- 양식 BIS-752-A, 재수출 영역
- 양식 BIS-6051P, 제한적 거래 관행법 또는 보이콧 복수거래 요청 보고서
- 양식 BIS-6051P, 연속 시트: 제한적 거래 관행법 또는 보이콧 복수거래 요청 보고서
- ENG 양식 7513, 미착상품에 대한 운송인의 수출신고
- 양식 7525-V, 운송인의 수출신고
- 양식 7525-V, 연속 양식: 운송인의 수출신고
- 위임장 양식

## [부록 2] 대외무역법 시행규칙(CFR Title 15, Subtitle B, CHAPTER I)

## PART 30. 대외무역규정(Foreign Trade Regulations)

## Subpart A – 일반요건

- 30.1 목적 및 정의
- 30.2 전산수출정보(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EEI)의 신고를 위한 일반요건
- 30.3 전산수출정보 신고자 요건, 수출거래 당사자, 수출거래 당사자의 책임
- 30.4 전산수출정보 신고절차, 신고기한 및 인증서
- 30.5 전산수출정보 신고의 신청 및 인증절차와 표준
- 30.6 전산수출정보 데이터 요소
- 30.7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 또는 신고인증 증명이 있는 기타의 상업적제에 관한 서류, 그리고 면제 이력에 대한 주석
- 30.8 신고인증 증명의 제출의 기간 및 장소 및 면제와 배제(exclusion) 이력
- 30.9 전산수출정보의 전송 및 수정
- 30.10 수출정보의 보존 및 자료의 제출 요구 권한
- 30.11~30.14 [개정됨]

## Subpart B – 수출통제 및 허가요건

- 30.15 서문
- 30.16 수출관리 규정
- 30.17 세관국경보호국 규정
- 30.18 국무부 규정
- 30.19 기타 연방기관 규정
- 30.20~30.24 [개정됨]

## Subpart C – 특별조항 및 특정형태의 거래

- 30.25 특정형태의 거래에 대한 평가
- 30.26 선박, 항공기, 화물차 및 기타 수송기 및 화물 수송용 컨테이너의 신고
- 30.27 수출되는 화물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미국에의 신고
- 30.28 항공기에 의한 “분할 선적”
- 30.29 수리 및 교환 신고
- 30.30~30.34 [개정됨]

## Subpart D – 전산수출정보의 신고를 위한 요건의 적용 배제

- 30.35 요건에 대한 신고를 면제받는 선적 절차

- 30.36 캐나다에 도착할 선적에 대한 면제
- 30.37 기타 면제
- 30.38 전체 상품정보의 신고에 대한 요건의 적용 배제
- 30.39 미군으로의 수송에 대한 특별 예외
- 30.40 미국 정부기관과 그 고용인으로서의 특정 수송에 대한 특별 예외
- 30.41-30.44 [개정됨]

#### Subpart E – 일반 수송기 및 적하목록 요건

- 30.45 전산수출정보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수출정보 또는 면제 이력의 전산제출에 대한 신고 인증의 증명이 있는 수송기 적하목록의 신고요건에 관한 개요(general statement)
- 30.46 수송 관료 수송기에 의한 수출정보의 신고요건
- 30.47 불안정한 적하목록이 있는 계약 하 수송기의 세관 통과 및 출발
- 30.48-30.49 [개정됨]

#### Subpart F – 수입요건

- 30.50 수입 허가 신고에 관한 개요
- 30.51 수입 허가에 필요한 통계정보
- 30.52 대외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s)
- 30.53 수리를 위해 반환된 수입품
- 30.54 캐나다로부터의 수입 조항
- 30.55 기밀 정보, 수입 허가, 그리고 취소
- 30.56-30.59 [개정됨]

#### Subpart G – 일반 관리조항

- 30.60 전산수출정보의 기밀성
- 30.61 통계적 분류표
- 30.62 비상 시의 예외
- 30.63 문서감축법에 따라 부여된 예산관리국 관리번호
- 30.64-30.69 [개정됨]

#### Subpart H – 처벌

- 30.70 깨끗한 다이아몬드 거래법의 위반
- 30.71 자동수출시스템에 의한 허위 또는 부정신고 또는 자동수출시스템의 오용
- 30.72 민간처벌절차
- 30.73 집행
- 30.74 자발적인 자기 정보공개
- 30.75-30.99 [개정됨]

[부록 3] 관세법 시행규칙(CFR Title 19, CHAPTER I)

PART 192. 수출통제(EXPORT CONTROL)

§ 192.0 범위.

이 파트에서는 중고 차량, 선박 그리고 항공기의 합법적인 수출절차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를 어긴 경우의 처벌과 법적책임을 제시한다. 또한 이 파트에서는 특정상품의 수출에 관련된 세관의 통제에 대한 규정도 제시하고 있다. 이 파트에는 파트30, 부파트E(15 CFR 파트 30)의 인구조사규정에 의해 시행되는 자동수출시스템(Automated Export System:AES) 규정과, 정부의 수출제휴에 관한 검토기관의 하나로서 출발 후 신고상황에서의 지원 거부, 혹은 참여자의 그러한 신고옵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세관을 알려주며, 그러한 세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항소절차를 제공한다.

Subpart A-중고 차량, 선박 그리고 항공기의 수출

§ 192.1 정의.

다음은 이 부파트 A에서의 일반적인 정의이다.

Certified, 증명서

복사본과 함께 쓰이는 경우, 원본의 복사본임을 증명하는 서명된 진술서를 포함하고 있는 정부권한에 의해 발행된 문서라는 의미이다.

Copy, 사본

원본문서의 사본 혹은 복사본을 나타낸다. 만약 원본문서의 뒷면에 글씨가 써져있다면, "complete copy"는 양면이 복사된 것을 의미한다.

Export, 수출

외국과의 무역을 목적으로 US 밖으로 상품을 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Self-propelled vehicle, 자체추진차량

자동차, 트럭, 트랙터, 버스, 오토바이, 모터 홈, 자체추진 농업기계, 자체추진 건설기계, 그 밖의 중고 혹은 철도를 제외한 육로를 이용하는 자체추진 차량

Ultimate purchaser, 궁극적 구매자

중개인의 자격으로 구매하는 중개인을 제외한, 재판매 목적 외의 용도로 자체추진 차량을 구매할 것이라 신뢰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

Used, 중고

제조사, 판매회사, 중개인에 의해 궁극적 구매자에게 법적타이틀이 이전된 자체추진 차량

§ 192.2 수출요건.

(a) 기본요건.

중고 자체추진 차량을 수출하려는 사람은 수출항구의 세관에 차량과 차량을 설명하는 필수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는 차량 식별번호 혹은 식별번호가 없다면, 제조식별번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차량이 보세창고절차 혹은 카르네 및 일시수입보세창고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면 차량의 수출은 오직 위의 요건에 따라 허가될 것이다; 보세창고절차 혹은 카르네 및 일시수입보세창고를 통해서 미국에 들어온 차량은 요건이 면제된다. 차량수출을 하려는 사람은 차량수출 대리인(agent)을 고용할 수 있다.

(b) 필수서류

(1) US 타이틀 차량.

- (i) 타이틀의 원본증명서를 발행받은 차량. 중고, 자체추진 차량이 미국의 관할 하에서 발행받기 위해서는, 소유주는 세관에 이 섹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에 타이틀의 원본증명서 혹은 인증된 타이틀의 원본증명서의 사본 및 두 개의 타이틀의 원본증명서 양면복사본 혹은 인증된 원본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ii) 타이틀이 제3자소유/권리를 증명하는 경우. 만약 중고, 자체추진 차량이 리스되었거나, 미국에서 기록된 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 섹션의 (b)(1)(i)를 준수하기 위해, 잠정소유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작성한 대상 차량이 수출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분리된 문구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문구는 제3자의 레터헤드페이퍼에 쓰여야 하며, 차량식별번호(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VIN), 소유주 혹은 리스된 차량의 저당권자의 이름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포함한 완벽한 차량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이 문구는 제3자의 원본서명과 서명된 날짜를 담고 있어야 한다.
- (iii) 미국정부 고용인이 관련된 경우. 중고, 자체추진 차량을 미국정부 고용인이 소유하고 있고, 고용인의 업무관련 출장명령에 따른 해외로의 재배치와 함께 차량이 수출된다면, 이 섹션의 (b)(1)(i)를 따르는 대신에, 지원업체의 차량수출에 관한 국내출장부서 절차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

(2) 외국 타이틀 차량. 외국타이틀 혹은 외국에 등록된 중고, 자체추진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는 이 섹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에 소유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원본서류(만약 원래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영어 번역본 포함) 및 두 개의 양면복사(필요하다면 번역본 포함)를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3) 타이틀이 없는 차량.

- (i) MOS를 발행받은 새로 생산된 차량. US제조사, 판매회사, 중개인로부터 구매한 새로 생산된, 자체추진 차량이 이 파트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중고가 되었고, 생산자의 생산보증서(MSO)를 발행받았으나, 미국의 관할 하에서 타이틀의 증명서를 발행받지 않은 경우, 소유주는 이 섹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에 원본 MSO와 두 개의 원본 MSO 양면복사본을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ii) MOS를 발행받지 않은 새로 생산된 차량. US제조사, 판매회사, 중개인로부터 구매한 새로 생산된, 자체추진 차량이 이 파트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중고가 되었고, 생산자의 생산보증서(MSO)를 발행받지 않았고, 미국의 관할 하에서 타이틀의 증명서를 발행받지 않은 경우, 차량이 도착하는 관할에 해당 차량에 관한 소유권 문서 요건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중개인의 송장과 같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및 두 개의 원본 서류의 양면복사본을 이 섹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에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iii) 폐기 혹은 조각 증명이 발행된 차량. 미국 관할 하에서 시행되는 폐기된 혹은 조각의 증명이 발행된 중고, 자체추진 차량의 소유자는 이 섹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에 원본증명서 및 인증된 원본서류의 사본 및 두 개의 원본 서류 양면복사본 혹은 원본의 인증된 사본을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iv)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혹은 등록되지 않은 타이틀 혹은 증명이 발행된 차량. 미국 관할 하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타이틀이나 증명이 발행된 혹은 타이틀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중고, 자체추진 차량이 MSO가 발행되지 않았다면, 차량이 도착하는 관할에 해당 차량에 관한 소유권 문서 요건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의 매도증서와 같은 소유권 혹은 보유권리에 대한 근거를 나타내는 원본서류 및 두 개의 원본서류 사본을 이 섹션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간과 장소에 세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소유주는 서면으로 세관에 차량의 조달은 명확한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출을 위해 제공한 차량이 절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c) 제공되는 시기

- (1) 선박 혹은 항공수출. 선박 혹은 항공으로 수출되는 차량에 대하여, 필수서류 및 차량은 적어도 수출 72시간 전에 세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 (2) 국경교차지점의 수출. 철도, 고속도로, 혹은 자체동력으로 수출되는 차량: (i) 필수서류는 적어도 수출 72시간 전에 세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ii) 차량은 수출시 세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d) 제공 장소. 항구책임자가 검사를 하기위한 필수서류와 차량을 제공해야 하는 장소를 수출자에게 통보할 것이다. 항구책임자는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릴 것이다.

(e) 서류인증. 세관은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서류가 거짓이 아님이 확실해지면, 세관은 서류에 체크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경우의 원본 서류(들)는 수출자에게로 반환된다. 원본증명서류가 세관에 제출되고 보유된다면, 차량의 수출 전에는 찾을 수 없다. 수출자의 진짜임이 증명된 원본서류의 사본은 보고의무에 따른 증거로 쓰일 수 있다.

### § 192.3 벌금.

(a) 이 파트에 제시된 규정의 요구사항에 위반하여 차량 수출을 시도한 수출업자에게는,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b) 이 파트에 제시된 규정의 요구사항에 위반하여 차량을 수출한 수출업자에게는, \$500의 벌금이 부과된다.

(c) 다음과 같은 수입, 수출을 고의로 하거나 혹은 시도를 한 수입업자 혹은 수출업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10,000를 넘지 않을 것이다:

- (1) 절도된 자체추진차량, 선박, 항공기 혹은 그 일부; 혹은
- (2) 식별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자체추진차량 혹은 그 일부

(d) 절도된 자체추진차량, 선박, 항공기 혹은 그 일부 및 식별번호가 지워졌거나, 조작된 자체추진차량 혹은 그 일부 19 U.S.C. 1627a에 따라 압수와 박탈의 대상이 될 것이다.

### § 192.4 운송업자의 법적책임

19 U.S.C. 1436의 규정 하에, 선박의 선장은 정확한 화물목록 제공의 책임이 주어진다. 만약 중고 차량이 화물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목록에 오류가 있다면 벌금에 대한 법적책임이 부과된다.

## Subpart B-자동수출시스템(AES)를 통한 수출정보의 신고

### § 192.11 AES 설명

AES는 모든 물품수출정보의 보고가 요구되는 수출업자(15 CFR 30.16 참조) 및 나가는 선박 정보의 보고가 요구되는 해상 운송업자에게, 서면이 아닌 전자적으로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되는 자발적 프로그램이다 (§§ 4.63, 4.75, and 4.76 of this chapter 참조).

자격 및 지원 절차는 전산신고요건-수출업자라는 이름으로 파트 30, 인구조사규정의 부파트 (15CFR part 30, subpart E)에 나와 있다. 이 인구조사규정(15 CFR part 30, subpart E)은 수출업자에게 AES의 가능한 세 개의 전자신고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 수출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오직 옵션4, 완전한 출발 후 수출정보 제출만이, AES 참여자가 사용하기 전에 대행회사의 사전승인을 필요로 한다.

### § 192.12

#### § 192.12 AES 사후출발(옵션 4) 신청자격 신청의 부인에 대한 기준; 항의 절차

(a) 승인 절차. 선박의 출항 후에 AES를 통해 수출품 정보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옵션의 신청은 세관, 통계청(Census), 기타 관련 정부기관의 만장일치로 승인되어야 한다. 관련 기관 중 단 한 기관이라도 비승인 결정을 한다면 이 신청은 거부된다.

(b) 거부의 근거. 세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근거로써 신청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 (1) 신청자가 국세조사 규정(Census Regulations)(15 CFR 30.7(d))에서 정의하는 수출자가 아닌 경우;
- (2) 신청자가 수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수출자의 수출품 기록의 전산제출이 지연된 적이 있거나 제출이 요구되는 수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는 경우);
- (3) 세관이 관세법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집행을 받는 수출법과 관련하여 중죄가 있을 상당한 근거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신청자가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경우; 또는
- (4) 신청자가 “의향서(letter of intent)”, 허위 또는 오인 진술서를 작성했거나 그 작성을 야기했거나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c) 거부 통지; 항의 절차. 신청자는 통계청에 의해 서한의 승인 또는 거부 통지를 받는다. (기타 기관에 의해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는 구체적인 항의 절차를 위해 그 기관과 접촉해야 한다.) 세관에 의해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는 거부된 구체적 이유를 제공 받는다. 신청자는 § 192.13(b)에 규정된 항의 절차에 따라 세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192.13 신청자의 AES 사후출발(옵션 4) 신청권한의 취소; 항의 절차

(a) 철회의 근거. 세관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신청자의 옵션 4 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출업자가 의향서, 허위 또는 오인 진술서를 작성했거나 그 작성을 야기했거나 중대한 사실을 누락한 경우;
  - (2) 세관이 관세법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집행을 받는 수출법과 관련하여 중죄가 있을 상당한 근거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의향서”를 제출한 수출업자가 기소되어 유죄선고를 받았거나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경우;
  - (3) 수출업자가 수출규정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는 데에 실패한 경우; 또는
  - (4) 옵션 4 제출자로서의 AES의 지속적인 관계자가 국내 보안에 위협을 줄 수 있어 옵션 4에의 지속적인 관여가 종결되어야 하는 경우
- (b) 취소 통지; 항의 절차. 세관이 신청자의 옵션 4 신청권한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는 그 결정의 근거를 서한으로 통지받는다. 신청자는 결정에 관한 통지의 수취로부터 30 역일 내에 항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단락에서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취소는 신청자가 모든 항의 절차에의 노력을 이미 다했거나 항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취소 통지의 수취 후 30 역일 내인 경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자 일부가(on the part of the program participant) 관세법을 고의로 위반 경우 또는 국내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취소의 효력은 통지 후 즉시 생길 것이다. 항의서는 Director, Outbound Programs, U.S. Customs, Ronald Reagan Building, 1300 Pennsylvania Ave, NW, Room 5.4c, Washington, DC 20229의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 항의서는 신청자への 서신 결정 또는 연장 통지를 항의서 수취로부터 30 역일 내에 발행하는 세관의 주소로 보내져야 한다. 연장 통지가 전송되면 신청자에게는 이번 연장의 근거와 결정 예정일이 제공된다. 옵션 4 신청권한이 취소된 참여자와 AES의 옵션 4에 선택되지 않는 신청자는 취소 또는 거부의 서신 통지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할 수 없다.

#### § 192.14 출하 전 필수적인 외부화물에 대한 전자정보.

- (a) 일반적 요구사항. 개정된 2002년 무역법(Trade Act)의 343(a)절에 따라, 또한 이 절의 단락 (e)에 준하여 이 절의 단락 (d) 하에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 선박, 항공기, 철도 또는 트럭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외부로 수송되는 모든 상업화물에 대하여 미국 내 주요 이해당사자(the United States Principal Party in Interest, USPP) 또는 수권 대리인은 이 절의 단락 (b)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세관국경보호국으로부터 이 절의 단락 (c)에서 열거한 특정 화물정보를 수취한 바를 전산으로 전송해야 한다. 특히, 필수적인 화물정보를 CBP에 사전적으로 전산 전송하기 위해 USPP 또는 수권 대리인은 세관국 경보호국이 승인한 전산데이터 교환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현재의 자동수출시스템, the Automated Export System, AES).
- (b) 데이터 제출
  - (1) 데이터 제출 시점. USPP 또는 수권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 기간 내에 필수적인 외국행 화물정보의 시스템 수락을 전산으로 전송하고 확인해야 한다(이 절의 단락 (b)(3)을 참조하라):
    - (i) 선박화물에 대해, USPP 또는 수권 대리인은 그 선박화물이 적재된 경우 미국 항구로부터의 출하 24 시간 전까지 수출 선박화물 정보의 시스템 수락을 전송하고 확인해야 한다;
    - (ii) 특급항공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을 포함한 항공화물에 대해, USPP 또는 수권 대리인은 미국 공항으로부터의 항공기 예정 출발시간 2시간 전까지 수출 항공화물 정보의 시스템 수락을 전송하고 확인

해야 한다;

- (iii) 특급택송에 의해 출하된 화물을 포함한 트럭화물에 대해,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은 트럭의 국경 도착 1시간 전까지 수출 트럭화물 정보의 시스템 수락을 전송하고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 (iv) 철도화물에 대해,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은 열차의 국경 도착 2시간 전까지 수출 철도화물 정보의 시스템 수락을 전송하고 확인해야 한다.
- (2) 기간에 대한 적용범위. 외부선박, 항공기, 트럭 또는 철도화물에 대해 CBP에 해야 하는 수출화물 정보를 요구하는 신고에 대한 이 절의 단락 (b)(1)의 기간은 개정된 343(a)절 하의 사전 화물정보신고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오직 선적 데이터의 총(full) 출하 전 신고를 요하는, 수출 허가가 없는 선적에만 적용한다. 이 절의 단락 (e)는 이 절의 단락 (b)(1)에서 제공하는 기간에 의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상술한다. 기타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수출에 대한 요구사항은 규제당국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 해당 기관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상태에 있다. CBP는 이 파트의 § 192.2(c)(1)와 (c)(2)(i)에 따라 중고운송 수출에 대해 72시간 사전통지를 계속하여 명령해야 한다.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은 기타 정부기관의 사전신고 요구조건에 대한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의 관련표제를 참조해야 한다. 특히, 미국 군수목록 항목(U.S. Munitions List items)의 수출에 대한 사전신고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미국 주 국제무기거래규정부서(U.S. Department of State's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를 참조하라(22 CFR 파트 120-130).
- (3) 데이터 수락의 시스템 조회.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이 이 절의 단락 (c)(1)과 (c)(2) 하에 요하는 데이터를 전송하고 CBP 승인 전산시스템이 그것을 전송받아 수락하면 시스템이 출하선박에 전송된 것과 같이(as transmitted for the outgoing shipment) 데이터가 수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부거래번호(Internal Transaction Number, ITN)를 생성하여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에게 전송한다.

(c) 필요한 정보

- (1) 현재 수집된 상품 데이터. 외국행 화물에 대해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에 의해 수집되어질 수출화물 정보는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이 승인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CBP에 현재 제출한 통계청 전산 송하인 수출신고(the Bureau of Census electronic Shipper's Export Declaration (SED))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AES 상품단위(AES Commodity Module)는 필요한 수출 데이터를 미리 기록하여 이 절 하에 필요한 수출화물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 요소가 없도록 한다. 승인된 시스템을 통한 전산신고를 요하는 수출화물 데이터 요소는 통계청규정(the Bureau of Census Regulations)의 § 30.63(15 CFR 30.6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2) 운송 데이터. 선박, 항공기, 트럭, 철도방식을 이용하는 AES 참여자는 현재 15 CFR 30.63 하에 다음의 운송정보에 대한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이 절의 단락 (c)(3)를 또한 참조하라):
  - (i) 운송방법. 운송방법은 제품이 수출되거나 수송된 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트럭)으로 정의한다;
  - (ii) 운송인 증명(선박, 열차, 트럭수송의 고유 운송인 증명은 4자리의 표준운송인 알파코드(Standard Carrier Alpha Code, SCAC); 항공기의 운송인 증명은 2 또는 3자리의 국제 항공운송조합(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코드로 함);
  - (iii) 운송수단 이름(해상운송에 대하여는 선박의 이름; 기타에 대해서는 그 운송수단의 이름);
  - (iv) 최종 목적지 국가(이 국가는 수출시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에게 화물이 구매되거나 가공되거나 제조되는 곳으로 알려진 국가임; 이러한 국가는 2자리의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코드로써 최종 목적지 국가로 증명됨);
  - (v) 수출예정일(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은 모든 형태의 운송에 대해 화물이 미국에서 출발하기로 예정

된 날짜를 신고해야 함; 실제 날짜를 알 수 없는 경우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은 출발시간으로서의 최적의 추정날짜를 신고해야 함); 그리고

- (vi) 수출항(화물이 미국에서 해외로 출발하는 항은 미국의 종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의 부록 C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고유의 코드에 의해 지정됨;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은 화물을 외국행 운송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수출항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운송인이 다른 항에서 화물을 수출하고 운송인이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에게 알린다면, AES 신고자는 수출항 정보를 수정해야 함).
- (3) 전자신고의 증명; 신고 면제.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은 외국행 운송인에게 전산신고 인증 증명(ITN), 저위험 수출자 인증(현재, 옵션 4 신고 인증), 또는 면제 증명서, 주석으로서 운송인의 외부 적하목록, 화물 운송장 또는 선적될 화물에 대한 기타 수출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전산신고 인증, 저위험 수출자 인증 또는 면제 증명서에 대한 증명은 통계청 수출무역통계규정(Foreign Trade Statistics Regulations, FTSR)과 FTSR 서한 (letter) 168 개정안 2(이 서한은 통계청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
- (4) 운송인 책임
  - (i) 화물 적재. 운송인은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으로부터 이 절의 단락 (c)(3)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관련 전산신고 인증 또는 이 절의 단락 (d)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화물에 대한 적절한 면제 증명서를 먼저 받기 전에는 화물을 적재하지 말아야 한다.
  - (ii) 고위험 화물. CBP가 잠재적 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화물에 대해서 운송인은 CBP에 의해 정식으로 통지받은 후에 조사/검사를 위해 화물을 인도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화물이 이미 출발한 경우 CBP는 국제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출운송인으로 하여금 그 화물을 재인도하도록 명령한다(이 장의 § 113.64(k)(2)를 참조하라).
- (5) USPPPI의 정확하다고 여겨지는 정보(information believed to be accurate) 수취. 이 절의 단락 (c)(1)과 (c)(2)에서 요하는 화물정보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이 다른 관계자로부터 이 정보의 일부라도 수취한 경우 CBP는 일반적인 상업적 관행에 의거하여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이 이 정보를 얻은 방법과 그들이 이 정보를 입증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방법을 고려한다.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이 수취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CBP는 이러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보에 한해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d) 신고 면제; 국세조사 면제 적용. USPPPI 또는 수권 대리인은 이 절 하에 출발 전 전산 정보신고의 대상이 아닌 모든 적재된 수출선적에 대해 적절한 면제 증명서(저위험 수출자 또는 기타 면제)를 외국행 운송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면제 증명서는 통계청에 의해 승인된 적절한 형식에 따른다. 수출하물에 대한 보고의 요구사항에 대한 모든 면제는 통계청규정의 §§ 30.50-30.58(15 CFR 30.50-30.58)에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면제는 이 절 하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 (e) 이행 날짜. 필수 선적에 관한 수출 화물정보 신고의 출발 전 일정과 ITN의 요구사항을 포함한 이 절의 요구사항은 AES 상품단위의 재설계와 보안지원법(Security Assistance Act)에 따라 상무부에 의해 공포된 의무신고규정의 유효일자의 재설계를 완성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진다(Pub. L. 107-228). 이 날짜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참고문헌

전정기, 『관세법』, 율곡출판사, 2009.

박성철 · 임목상, 『수출입통관의 이해』, 두남, 2008.

한국생산성본부 내부자료

US Census Bureau, *Automated Export System Compliance Review Program: Best Practices*, November 2008.

DOC, "Introduction to the Commerce Department's Export Controls," 2007.

GAO, "Export Controls - Challenges Exist in Enforcement of an Inherently Complex System," GAO-07-265, December 2006.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



관세연구 10-01

## 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

2010년 10월 22일 인쇄

2010년 10월 29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마정화 · 정경화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16-2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